중국 화장품, 식품 수출 핸드북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C·A
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중국 화장품, 식품
수출 핸드북

K·C·A 대한화장품협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 중국 화장품 및 식품 시장 현황

1. 중국 화장품 시장 현황 ····· 06
   가. 현황
   나. 對중국 화장품 교역 동향
2. 식품 시장 현황 ····· 14
   가. 현황
   나. 對중국 식품 교역 동향

2 중국 화장품 및 식품 법규 현황

1. 중국 무역법규 및 규제 내용 ····· 26
   가. 화장품
   나. 식품
2. 무역규제 사례 ····· 44
   가. 화장품
   나. 식품

중국 화장품, 식품 수출 핸드북

Handbook for Exporting
Cosmetics and Food to China

3 對 중국 화장품 및 식품 수출 절차

1. 화장품 ····· 66
   - 가. 상품 등록
   - 나. 제품 행정허가 신청
   - 다. 수출 통관 및 선적
   - 라. 현지 통관
2. 식품 ····· 76
   - 가. 식품 수출 통관 절차
   - 나. 통관 전 포장 라벨 심의
   - 다. 통관 신고
   - 라. 세금 납부
   - 마. 검역 검사
   - 바. 통관 허가

4 전망 및 대응방안 ····· 80

- **주요 참고자료** ····· 86
- **대중국 소비재 수출 사업 일정** ····· 88

Chapter 1

중국 화장품 및 식품 시장 현황

1 중국 화장품 시장 현황
Chinese Cosmetics Market Status

가. 현황

최근 들어 중국 화장품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여 중국은 이미 핫 소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주민수입 증가, 도시화율 제고, 프리미엄 소비 추구 등 화장품 소비 개념의 전환 등으로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중국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4,843.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함

· 2011~2015년 5년 간 연평균 증가율(CAGR)은 20.6%에 달함

· 2011~2015년 인구 통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1인당 화장품 소비액은 169.8위안에서 352.4위안으로 늘어남

· 5년 간 1인당 평균 화장품 소비액은 약 2배 가량 증가함

· 이런 추세로 2015년 중국의 화장품 소비액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제 2위의 화장품 소비시장으로 부상함

[표1] 2011~2018년 중국 화장품 소매시장 규모

(단위 :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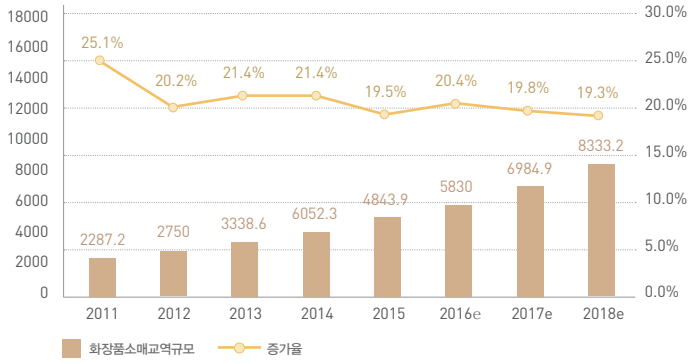

자료원 : 2016年中国化妆品行业现状及未来发展趋势及行业发展前景分析, 中国产业信息

온라인 시장 | 온라인 쇼핑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화장품의 온라인 거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중: 온라인 소비재 쇼핑에서 화장품이 30~40% 수준의 비중을 차지

· 2015년 중국의 화장품 온라인 상 거래액은 1,767.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 2011~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46.4%임

[표2] 2011~2018년 중국 화장품 온라인상 거래 규모 (단위 :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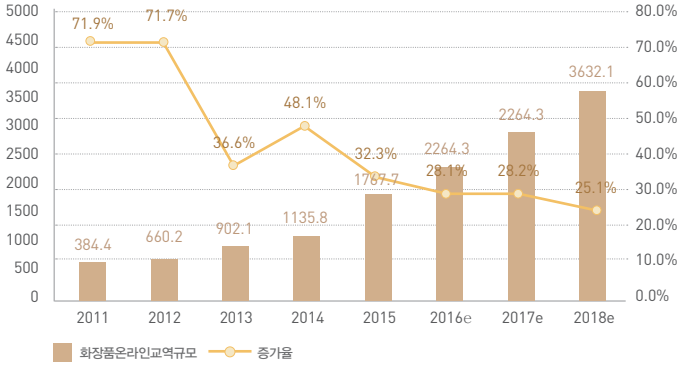

자료원 : 2016年中国化妆品行业现状及未来发展趋势及行业发展前景分析,中国产业信息

· 2016년 중국 연중 최대 쇼핑축제 광군제 * 당일, 중국 온라인 상 화장품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며 212억 4천만 위안으로 집계. 2,000억 위안 이상의 광군제 화장품 소비에서 14.9%가 해외직구로 나타남

*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光棍节는 매년 11월 1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009년 솔로들을 위해 처음 시작한 쇼핑 할인 행사, 2016년 광군제 매출액은 1,027억 위안으로 집계

· 중국 현지 컨설팅사 Syntun星图数据는 2018년 이후 화장품 소비 중 50% 이상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유통채널: 중국 주요 B2C 온라인 매장에서 티몰天猫과 징둥京东이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 알리바바 산하의 티몰이 63.9%의 시장을 장악, 징둥이 28.2%의 시장점유율로 그 뒤를 쫓고 있음. 이하오덴一号店, 쑤닝이거우苏宁易购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은 5% 미만으로 집계

· 이는 티몰과 징둥이 온라인 시장을 운영해 온 시간이 길고 규모가 가장 큰 종합 온라인 쇼핑몰이며 '티몰 글로벌天猫国际', '징둥 글로벌京东全球库购' 등 해외브랜드 전문 취급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시장을 선점

– **영업방식: 각 화장품업체들은 주로 티몰, 징둥 등 온라인 플랫폼에 매장을 개설하여 직영하는 방식을 취함**

· 각 화장품 업체의 직영매장 외에도 티몰, 징동 등 온라인 플랫폼(티몰, 징둥 등)에서 직접 상품을 취급하는 영업방식이 23.9%의 비중 차지

[표3] B2C 온라인 매장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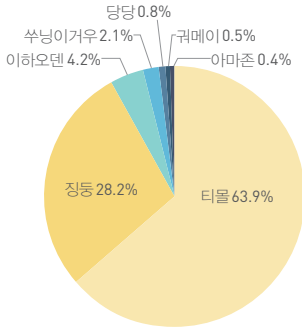

[표4] 화장품 온라인 매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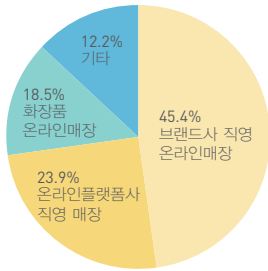

자료원: 星图数据(Syntun)

– 브랜드: 최근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시장을 끊임없이 확장 중

· 2016년 중국 토종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43.4%를 기록했으나 2016년 중국 온라인 화장품 최대 매출 TOP 10 브랜드 중 토종브랜드는 단 1개(Carslan) 뿐임

· 이는 토종 브랜드들은 브랜드 파워가 약하며 중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을 의미

· TOP 10 브랜드 중 대부분은 스킨케어 용품과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을 주로 취급 하는 브랜드임

[표5] 토종, 해외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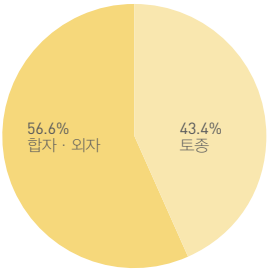

[표6] 2016년 화장품 온라인 시장 TOP 10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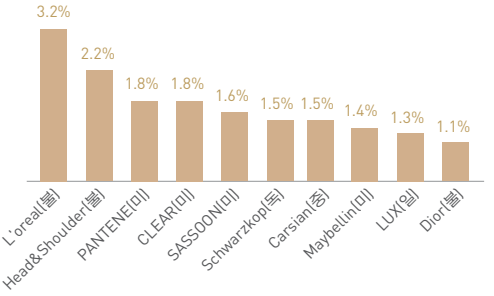

자료원: 星图数据(Syntun)

– 분야별: 중국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아직까지 '스킨케어 용품'과 '바디케어 용품'이 절대다수 시장을 점유

· 스킨케어 용품이 40.9%, 색조화장품이 22.8%, 바디케어 용품이 3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보고서에서의 화장품 분류

– 스킨케어: 클렌징폼, 클렌징로션, 마스크팩, 아이팩, 립팩, 톤업크림, 립밤, 선베이스 등

– 색조화장품: BB 크림, 에어쿠션, 팩트 파우더, 아이펜슬, 블로셔, 립스틱, 마스크라 등

– 바디케어: 샴푸, 린스, 헤어 컨디셔닝 오일, 바디워시, 바디로션 등

– 해외직구: 해외직구 화장품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스킨케어 용품, 색조화장품, 바디케어 용품이 각각 52%, 24.7%, 22%로 나타났음.

· P&G,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들이 1990년대부터 중국시장을 개척하여 바디케어 용품은 국내 오프라인 매장, 티몰 등 온라인 종합몰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

· 중국 해외직구 TOP 10 인기화장품 브랜드 중 지방시, 크리스찬 디올, 샤넬 등 글로벌 브랜드가 1~3위에 랭킹

· 한국 브랜드 리더스와 메디힐이 10위에 랭킹되었으며, 이는 한국 마스크팩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상품으로 부상했기 때문임

[표7] 해외직구 상품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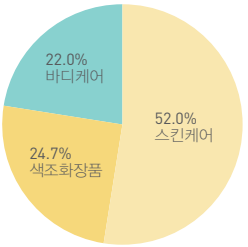

[표8]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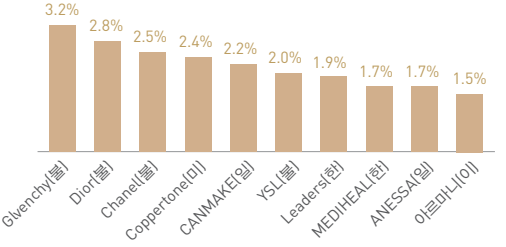

자료원 : Syntun

나. 對중국 화장품 교역 동향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은 201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을 제외하고 수출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

– 특히 2014, 2015년 연속 2년 간 對 세계 수출이 전년대비 50% 대의 증가율을 보임

[표9] 연도별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단위 :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0년	791,399	75.4	1,032,429	20.2	–241,030
2011년	813,978	2.9	1,203,465	16.6	–389,487
2012년	977,866	20.1	1,239,181	3.0	–261,315
2013년	1,231,289	25.9	1,275,188	2.9	–43,899
2014년	1,873,570	52.2	1,386,355	8.7	487,215
2015년	2,910,136	55.3	1,397,171	0.8	1,512,965
2016년	4,178,421	43.6	1,434,067	2.6	2,744,354

자료원 : 관세청 수출입 통계 (2016)

– 국가별 화장품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 홍콩 등 중화권 국가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상위 10개국 수출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음

[표10] 화장품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위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률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중국	1,172,166	40.3	중국	1,569,712	37.6	33.9
2	홍콩	687,200	23.6	홍콩	1,244,089	29.8	81.0
3	미국	238,084	8.2	미국	346,972	8.3	45.7
4	대만	139,419	4.8	대만	182,674	4.4	32.6
5	일본	137,788	4.7	일본	135,952	3.3	–2.5
6	태국	93,321	3.2	태국	118,331	2.8	26.8
7	싱가포르	65,737	2.3	싱가포르	93,869	2.2	42.8
8	베트남	53,656	1.8	베트남	71,399	1.7	33.1
9	말레이시아	47,989	1.6	말레이시아	60,938	1.5	27.0
10	러시아 연방	35,591	1.2	러시아 연방	47,817	1.1	34.4

자료원 : 관세청 수출입 통계 (2016)

[표11] 2016년 화장품 수출 현황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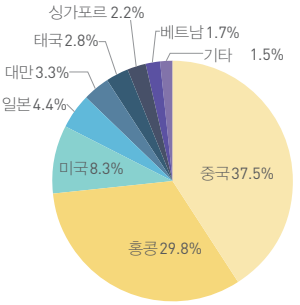

자료원 :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17)

(대중국 수출현황) 우리나라의 중국 화장품 수출은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최근 5년 간 수출액이 5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

– 특히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여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수입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12] 對중국 화장품 수출 변화 추이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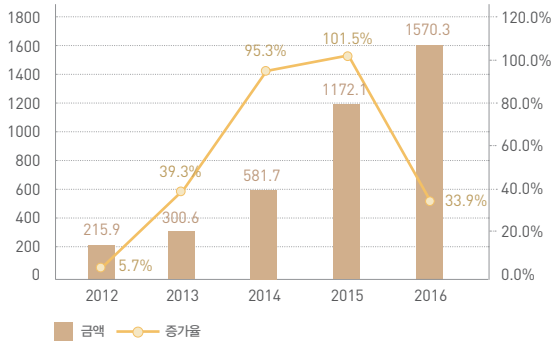

자료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www.kcci.re.kr) 주) 좌축은 금액, 우축은 증가율 표시

– 제품 유형별로 보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한국산 화장품은 기초화장품으로 41.8%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기타 미용 또는 화장품 제품류, 기타 조제향료 · 화장품 · 화장용품류, 그리고 샴푸순으로 수출되고 있음

[표13] 2016년 對중국 제품 유형별 화장품 수출 비중

종류	비중(%)
기초 화장품류	41.8
기타 미용 또는 화장품 제품류	29.6
기타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류	10.5
샴푸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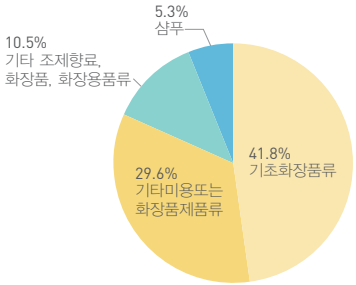

자료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수출가이드북(2017년)

가. 현황

중국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수준 제고로 1인당 평균 식품구매력 제고 및 지출 증가 등 중국 식품산업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임

– 중터우구원中投顾问이 발표한 '2017~2021년 중국 식품산업 투자분석 및 전망'에 따르면 2015년 식품공업 중 규모이상 기업의 영업수입이 11.3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연평균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금납부액이 9,643억위안으로 2010년에 비해 71.4%, 연평균 11.4% 증가

· 식품공업의 이윤총액은 8,028억 위안으로 2010년보다 56.9% 증가, 연평균 9.4% 증가

[표1] 2011~2015년 중국 GDP, 규모이상 공업기업 및 규모이상 식품공업기업 증가치 추이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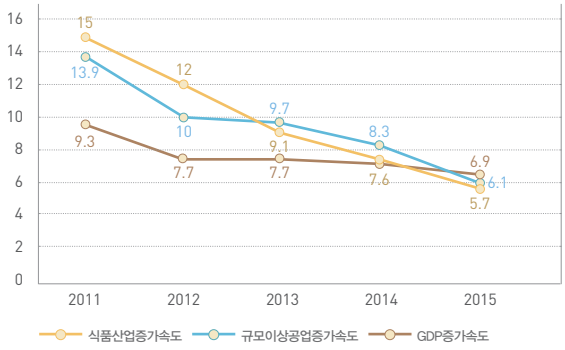

자료원 : 중국식품산업발전 현황 분석(2016. 12월), 搜狐(sohu.com)

[표2] 2011~2015년 중국 식품공업 중 규모 이상 기업 이윤총액 및 증가율

(단위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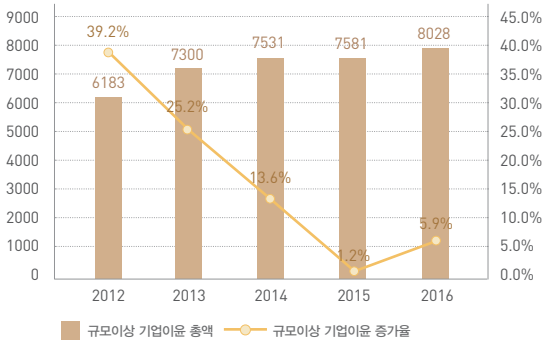

자료원 : 중국식품산업발전 현황 분석(2016.12월), 搜狐 (sohu.com)

– 중국 식품공업의 경영소득 현황을 보면 산둥, 허난, 장쑤, 쓰촨, 광둥, 후난, 안후이, 지린 등 상위 10개 지역이 중국 식품산업의 66.5%인 7억 4,328억 위안을 차지

· '12.5' 규획기간(2010~2015년) 중국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지역의 식품산업 현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3] 2015년 중국의 권역별 식품산업 경영소득 현황

권역명	경영소득	특징
동 부	4조 9,700억 위안('10년 대비 52.5% 증가)	중국내 식품산업의 우세 지역
중 부	3조 1,500억 위안('10년 대비 117.2% 증가)	농업자원 우세로 식품산업 급속 성장
서 부	2조 2,100억 위안('10년 대비 84.2% 증가)	식품공업 육성 정책으로 식품산업 성장 가속화
동 북	1조 2,700억 위안('10년 대비 39.6% 증가)	4개 권역 중 발전 속도가 가장 느림

자료원 : 중국식품산업발전 현황 분석(2016.12월), 搜狐(sohu.com)

(소비주체) 바링허우(80년대 출생자) 소비습관, 인구 고령화 가속화, 2016년 1월 1일 시행하고 있는 두 자녀 정책은 향후 식품소비시장 성장 견인 예상

- 향후 10년간 중국의 식품소비는 50%, 그 가치는 1조 달러 초과 예상
- 특히, 향후 5년 간 중국정부는 1억 명의 인구를 도시로 이동시키는, 즉 도시화율을 60%대로 올릴 것을 추진. 이에 따라 2,3선 도시의 대중화된 소비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4] 향후 10년 중국의 식품소비 예상치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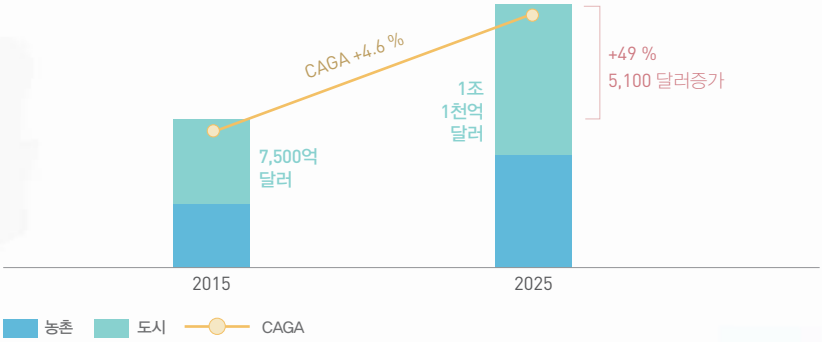

자료원 : 국가통계국, 네덜란드합작은행

[표5] 주체별 소비행태

구분	특징	내용
바링허우 (80后)	소비 구매력 제고, 스마트한 소비, 품질 중시	· 새로운 소비행태, 방대한 구매력, 잦은 소비 · 바링허우는 중국 인구의 1/3인 4억 5천만 명에 달함 · 바링허우, 향후 5년 간 전체 소비의 65% 차지 예상 · 품질, 신선한 제품에 대한 호기심, 건강한 생활방식 선호 · 바링허우의 90%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 및 고급 식재료에 지출 희망 · 대부분 바링허우 세대가 수입제품 및 유기농식품 구입 희망, 또한 마트의 신선코너에서 쇼핑하는데 시간을 투입함
고령층	인구 고령화 추세 뚜렷, 건강보조 및 기능식품 선호	· 60세 이상 인구 매년 3% 성장, 2035년 중국 총인구의 27% 점유예상 · 노령화는 사회적 문제 외에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요발생 · 중국내 건강보조식품 산업은 비교적 발전이 느린 반면, 수요량은 급증 · 해외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기회 모색 가능 · 고령층은 식품의 기능성과 건강성, 저혈당, 고지혈 감소, 섬유질이 많은 식품 등에 관심을 가짐
두 자녀 정책 실시	영유아용 조제분유 유망	· 2016년 1.1일부 두 자녀 정책 실시에 따른 신생아 출생 증가로 조제분유가 식품 소비 성장 견인 · 영유아 관련 용품, 특히 조제분유 소비 확대 예상 · 향후 5년 간 영유아 조제분유 소비량은 연평균 9–10% 성장 예상

자료원 : 중국식품산업발전 현황 분석(2016.12월), 搜狐(sohu.com)

[표6] 중국 인구 노령화 추세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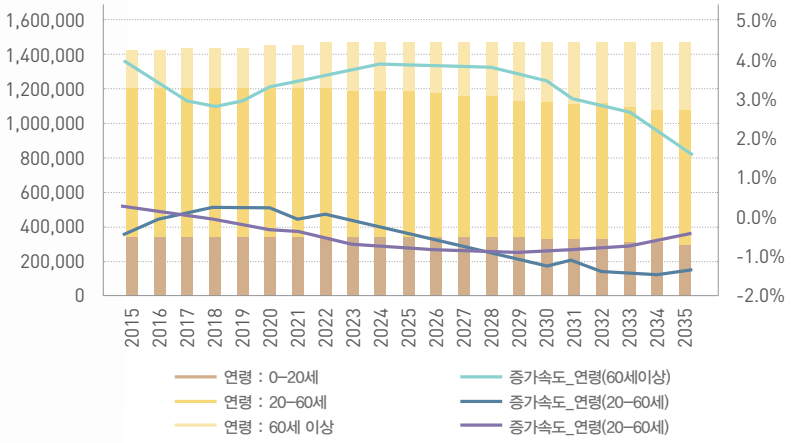

자료원 : 2017中国食品产业发展趋势报告, 新民网(xinmin.cn),

(식품안전 의식 제고) 중국내 심각한 환경오염문제, 식품안전 사고 및 불합리한 식습관으로 야기된 각종 질병으로 인해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지속 증대

– 단적인 예로 포장식품 중 견과류 간식은 최근 들어 인기가 좋아, 라면, 단 비스킷, 사탕, 쿠키, 젤리, 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류 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습관 방식을 반영한 음료류가 음료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 당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와 과즙음료는 2015년 판매량 모두 1~3%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소프트 음료, 신선한 생과일 및 야채, 커피음료, 운동 및 기능성 음료 등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표7] 음료시장 연 판매액 증가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p)
탄산음료	0.4%	–0.1%	–0.2%
생수(병포장)	10.6%	7.8%	7.0%
기능성음료	19.1%	13.8%	13.6%
차음료(용기 포장)	3.7%	–1.6%	–0.2%
병/캔커피	17.0%	21.2%	21.1%
과즙음료	–3.6%	–2.6%	–2.9%

자료원 : 欧睿

(수입식품 선호) 중국에서도 최근 들어 생활양식 고급화, 서구식 음식과 식습관에 익숙해지고 있음

– 커피 소비의 급속한 증가, 샐러드, 올리브유, 치즈 버터 사용 및 각종 서양식 케익이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음

– 커피를 예로 들면, 2015년 중국인 1인당 평균 커피 소비량은 매년 63g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 평균치 1.2kg보다 낮으나, 하지만 소비수준 향상 및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숙함으로 인해 중국인의 1인당 평균 커피소비량은 매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여 2020년에는 280만 자루(자루 당 60kg)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음용 커피 종류도 인스턴트 커피에서 점차 원두커피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 특히 1, 2선 도시에서 커피 음료의 소비는 거의 일상화가 되었으며, 커피전문점의 급속한 증가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포도주 또한 서양 생활패턴 중 하나로 최근 들어 대중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 소비자들의 포도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커지면서 고급식당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까지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시진핑정부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고급 포도주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반면에 중저가의 포도주에 대한 개인 소비는 증가함

· 향후 중국이 포도주 소비의 주력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소비자들은 포도주의 대중화와 소비 업그레이드에 따라 중저가 포도주에서 프리미엄 포도주 소비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수입식품의 보급 또한 소비자의 생활의 질을 올리는 데 기여함

·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수입식품의 판매량도 점차 증가

· '미국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은 최대 수입식품 소비국으로 그 시장 규모는 4,8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의 대다수 소비자들은 수입식품 가격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다고 인식

·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수입식품 구매 고려요소 설문 조사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은
→ 제품의 품질을 가장 중시(29%) → 가격의 합리성 여부(27%) → 제품의 완전무결 여부(15%) 등으로 나타남

· 설문대상자들은 수입식품 구입시 소비금액은 100~200위안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 26%의 설문대상자들은 매 달 수입식품을 두차례 이상 구입, 그리고 수입식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 대상자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나. 對중국 식품 교역 동향

• 對 세계 교역현황 : 2016년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은 브렉시트(BREXIT)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제 불안 및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와 같은 악재에도 불구, 2015년 다소 위축되었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 2016년 가공식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5,355억 6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5.7% 증가

– 하지만 농림수산식품을 포함한 2016년 국가 전체 수출액은 4,954억 달러로 전년대비 5.9% 감소

[표1] 연도별 농림수산식품 수출추이

(단위 :억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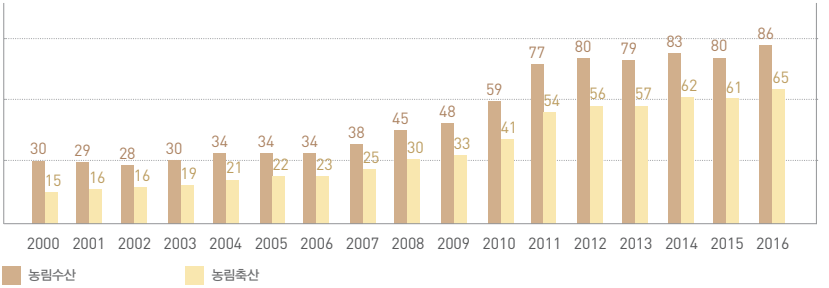

자료원 :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중국, 최대 수출 증가국)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나 최대 수출증가 국가는 중국으로 라면, 조제분유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1억불 이상 수출실적 증가

[표2]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국가	2015		2016		증감률 (B/A)	증감액 (B-A)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합계	8,028.4	100.0	8,592.6	100.0	7.0	564.2
1	일본	1,832.2	22.8	1,895.8	22.1	3.5	63.6
2	중국	1,360.5	16.9	1,473.9	17.2	8.3	113.4
3	미국	859.0	10.7	957.2	11.1	11.4	98.2
4	베트남	460.7	5.7	500.3	5.8	8.6	39.6
5	아랍에미리트	335.4	4.2	415.7	4.8	23.9	80.3
6	홍콩	399.2	5.0	388.6	4.5	△2.7	△10.6
7	대만	290.7	3.6	332.0	3.9	14.2	41.3
8	태국	215.0	2.7	295.1	3.4	37.2	80.1
9	인도네시아	161.0	2.0	170.4	2.0	5.8	9.4
10	호주	165.0	2.1	169.9	2.0	3.0	4.9

자료원 :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표3] 2016년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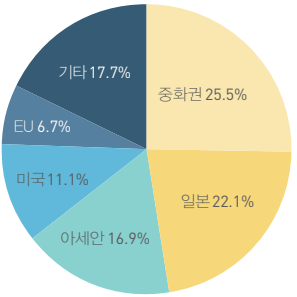

자료원 :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품목별 수출현황) 주요 수출국별 대표 수출 품목은 상이한 편이며, 중국의 경우 조제분유, 라면, 김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은 편임

[표4] 2016년도 우리나라의 국가별 주요 품목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명	품목명	수출금액(백만 달러)	증감률(%)
일 본	파프리카	93.3	9.8
	김	78.3	53.0
	김치	47.1	5.7
중 국	조제분유	104.9	11.6
	라면	75.3	94.3
	김	68.2	2.7
미 국	음료	69.0	10.1
	라면	35.6	20.1
	배	29.5	13.5
	인삼	17.8	25.2
베트남	라면	7.0	90.4
	배	5.0	114.5
	딸기	1.0	10,375.9
대 만	김	18.9	19.4
	라면	16.4	21.7
	양파	4.1	4,053.1
홍 콩	굴	12.8	59.7
	포도	1.4	145.3
	해삼	9.2	△36.2
	김	7.0	△24.5

자료원 :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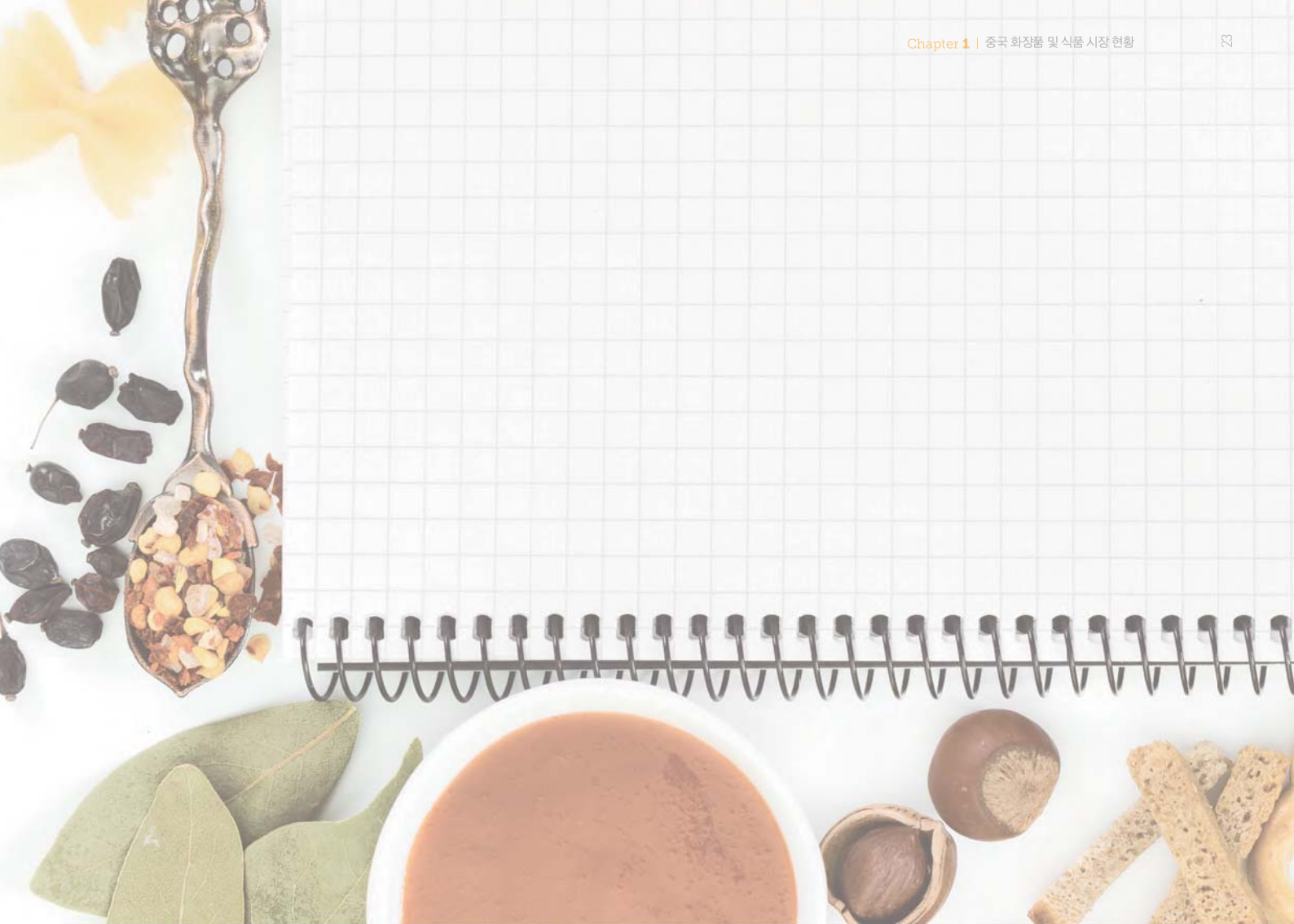

Chapter 2

중국 화장품 및 식품 법규 현황

가. 화장품 해외직구 적용 세제(행우세) 개정

– (시행) 중국은 2016년 4월 8일부 종전 해외직구 제품에 적용해 오던 행우세를 대폭 개정

– (주요 내용) 중국 재정부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를 통한 수입 및 행우세 정책 조정'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4월 8일 이후로는 해외직구 제품은 모두 개정된 세율을 적용 및 납부해야 함

* 행우세行郵稅 개인물품 방식으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수입관세 대신 부과하는 간이 관세 (일종의 우편세)

[표1] 해외직구 제품 세율 핵심 변경내용

구 분	2016.04.08 이전	2016.04.08 이후	비 고
일반무역	소비세 30% 증치세 17% 관세 2~5%	'16년 1월 1일 고급화장품에 한해 소비세율 15% 하향 적용	
개인물품	행우세 적용 – 화장품 50%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	개정 행우세 적용 – 스킨케어 30%, – 메이크업, 향수 60%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	스킨케어 행우세↓ 메이크업 향수 행우세↑ (스킨케어 166위안 이하, 메이크업 83위안 이하 면세)
해외직구	행우세 적용 – 화장품 50%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	종합세 적용 – 1회 관세면제 한도 (2천 위안으로 상향) * 기존 : 1천위안 – 1년 면세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설정 – 한도내에서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30% 감면, 관세는 0%로 설정 – 500위안 미만 제품에 적용된 행우세 폐지	100위안 이하 제품 면세 혜택 없음

자료원 :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준비, 아모레퍼시픽 (2017)

– 한편, 개인 수화물과 우편물에 부과되는 행우세는 기존의 10%, 20%, 30%, 50%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됨

1. 최혜국 세율이 0%인 상품에 대해 15%
2. 화장품 등 소비세가 매겨지는 상품은 60%
3. 기타 상품은 행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

소비세 개정

– (시행) 기존에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스킨케어(0%), 컬러(30%), 고급화장품(30%) 등 3가지로 분류하여 부과함

· 하지만 고급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사실상 컬러제품에만 30%의 소비세 부과

– (주요 내용) '16년 1.1일부 고급 화장품(고급 미용수식류, 고급 스킨케어류)에 대해 소비세율(15%) 부과

· 고급제품의 기준: 세금포함 제품가격完税价格이 10위안㎖(g), 또는 15위안/장 이상 제품을 가리킴

· 따라서 기존에는 모든 스킨케어 제품에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16.10월 1일 부터는 일부 고급제품(아이크림, 에센스 등 용량 단가가 높은 제품)에 대해 소비세가 부과

* 컬러제품의 경우, 가격에 따라 소비세가 없어지거나 15%로 하향되어 부과될 예정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개정

– (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2007년 위생부에 의해 제정됐던 '화장품 위생규범'의 개정판으로 중국 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기준을 참고해 수정됨

– (주요 내용) 개정된 법안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동 규범에서는 화장품의 중금속 안전성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금속 제한량을 조정함

* 납 함유 제한량은 기존 40㎎/㎏에서 10㎎/㎏로 조정

* 비소 함유량은 기존 10㎎/㎏에서 2㎎/㎏로 조정

* 카드뮴 제한량은 5㎎/㎏로 신규 추가

* 디옥산은 30㎎/㎏로 초과 금지

* 석면은 검출 자체 금지

– 기존의 '위생규범'과 비교해 사용금지, 제한성분과 허가 성분표가 수정됨

[표2]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

구 분	총 합	추 가	수 정	삭 제
사용금지 성분	1388개	133개	137개	–
제한 성분	47개	1개	31개	27개
허가 방부제	51개	–	14개	5개
허가 자외선차단제	27개	–	6개	1개
허가 착색제	157개	1개	69개	–
허가 염색제	75개	–	63개	21개

자료원 : 중국국가식품약품관리총국(CFDA)

– 화장품 검사 및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방법이 수정됨

· 개정된 법안에서 공포한 60가지 사용금지 · 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방법을 새로 추가함

– 자외선 차단지수 표시법 변경(30+ → 50+)

구 분		표시방법
자외선 차단 지수 (SPF)	2–5	실제 측정값
	6–50	상한 : 실제 측정값(정수) 하한 : 실제 측정값 – 95% 신뢰구간값 실제 측정값 보다 낮은 숫자 중 가장 높은 5배수 중 낮은 값
	50 초과	1) 실제 측정값 – 95% 신뢰구간값 〉 50 : 50+ 2) 실제 측정값 – 95% 신뢰구간값 ≤ 50 : 상한 : 50+ 하한 : 실제 측정값 – 95% 신뢰구간값

자료원 : 아모레퍼시픽(2017),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준비

– 한편,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해당 품질보증기간까지만 판매 가능

·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 않은 상품이 CFDA(중국국가식품감독관리총국)인증을 획득했으나 새 규범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함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구 대상 수입화장품(일반) 등록관리제 잠정 시행

– **(시행) 중국 CFDA에서는 2017년 1월 17일 상하시 푸동신구에서'최초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

– **(주요 내용)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하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하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되는 비특수용 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

· 이번 조치의 목적은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수입 신고하는'최초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업무의 규범화, 효율화에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등록 시스템을 통해 CFDA, CIQ(수출입검험국), 해관 등에도 위생허가증 품목별 등록서류가 공개됨에 따라 철저한 수입 화장품관리를 추진함에 있음

–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관리제 주요 내용)**

· 책임자 수권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는 해외 기업은 상하이 푸동신구에 소재한 기업 법인을 영내 책임자(재중 책임회사)로 수권해야 함

– 해당 책임회사는 제품의 수입, 경영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 부담

· 관련 서류 제출

– '재중책임회사'는 제품의 최초 수입 전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해야 함

– 등록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음 (現 위생허가증 구비서류와 동일)

1.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신청표(온라인 작성)
2. 제품 중문명칭 명명 근거(온라인 작성)
3. 제품 성분표(온라인 작성)
4. 제품 포장(라벨, 설명서 포함) 이미지
5.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6. 제조공정도
7. 제품기술요구

8. CFDA에서 지정한 화장품 행정허가검험기구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9. 제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위험물질 관련 평가자료

10.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 고위험물질 사용금지 요구 부합 확인서

11. 제품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내 생산 및 판매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12. 역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 증빙자료

13. 화장품행정허가 신고접수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여 등록에 도움이 될만한 기타 자료

· 등록자료 감독 및 검사

–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제품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자료에 대해 중점 심사 진행

☞ 기존에는 사전에 진행했던 단계를 등록 후 사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임

–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회사에게 30일 내에 자료보완 등의 요구 가능

– 이 경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일시 중지함. 즉 최장 30일 간 수입, 판매 관련 모든 활동이 금지됨

· 위법사항 및 안전성 문제 발견시

– 관련 제품의 판매 정지 및 회수 처리

· 등록정보의 변경

– 기존 등록사항(예: 디자인, 용기, 용량, 제조업자 등) 변경 시 관련 내용 및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책임회사 변경 시 변경 전 책임자 지정동의서와 변경 후 책임자가 제품(변경 전 이미 출시된 제품 포함) 품질안전 책임을 부담한다는 승낙서(동의서)제출

[표3] 화장품 위생허가 인증절차(비특수)

* 在中책임회사 : 국내 신청기업의 중국 법인의 역할을 하며, 해당 제품의 CFDA 등록, 신청 주체, 제출 자료, 결과, 제품 등에 대해 책임 부담, 사후 관리를 위해 위생허가증 원본 보유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표 4] 중국 내 화장품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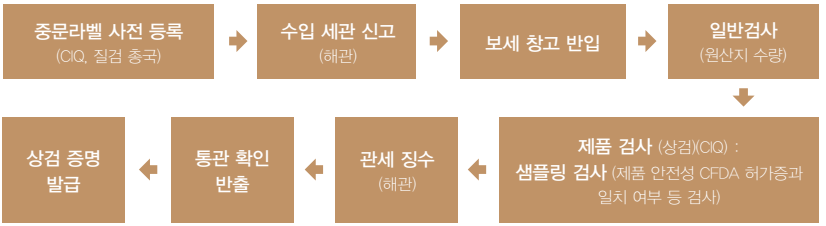

* 사전조건 : CFDA 위생허가 등록 제품

자료원 : 상동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시행

– (시행) 2017년 3월 1일부터 '수입화장품 중국 내 수화인 등록进口化妆品境内收货人备案**,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이하 '규정') 본격 시행**

· 이는 중국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입화장품 수입, 판매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음을 의미

· 이 '규정'은 수입자의 수입, 판매기록을 감독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상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임

· '규정'은 지난해 8월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 이하 '질검총국'에 의해 공고

– (주관부처) 중국 질검총국이 등록备案 **감독관리 업무 총괄**

· 질검총국이 각 수입항구에 설립한 수출입검험검역기구는 수화인 등록신고 접수, 자료 심사 등의 업무 담당

· 수입화장품 반출검사검역기관은 수입화장품의 수입과 판매기록의 감독 및 관리 담당

– (등록) 수화인은 공상등록지역의 검역검험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검역검험기관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 등록여부를 결정

· 등록서류에 변경사항 발생시 수화인은 수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수정 가능

·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 전 미리 등록 신청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1.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된 '수화인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2. 공상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증서, 법정대표자 신분증명,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서 등 사본 제출 및 원본 확인
3. 수입업체의 '기업품질안전관리제도'
4. 수입업체의 화장품 안전에 관련된 기관 설치, 부서 업무 및 책임 관리에 대한 자료
5. 경영계획에 편입한 화장품의 종류, 보관장소
6. 2년 내 화장품 수입, 가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업자에 관한 증명서(화장품 품종,수량)
7. 검역신고기관의 등기증명서 사본(원본 확인)

[표5] 수입 식품/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

주 : * 사이트(http://ifre.eciq.cn)

– (수입기록)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기록을 작성하고 전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수입 화장품의 해외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관련 정보도 작성해야 함

· 수화인은 수입기록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 해외 생산기업 및 수출업체(대리업체)가 스스로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음

[표6] 화장품 수입 관련 필수 기재 사항

구 분	내 용
수입 화장품 수입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품명, 브랜드, 규격, 중량, 가격, 생산번호, 유통기한 및 생산일자,무역국가(지역), 생산가공기업 명칭 및 정보기록번호, 수출업체(대리업체) 명칭 및 정보기록번호, 검사기관, 목적지, 검사신고번호, 입국 시간, 보관장소, 담당자 및 연락처 등
해외 생산기업 및 수출업체에 관련된 정보	기업 명칭, 주소, 국가(지역), 연락처 및 화장품 종류, 작성자 관련 정보 등
수화인이 보관해야 할 수입 기록 관련 서류	무역 계약서, 선하증권, 제출해야 할 해외공식증명서, 검사 신고서 사본, 검사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입화물검사증명'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등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 (판매기록) 수화인은 수입화장품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전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판매기록은 판매경로 및 리콜기록 등의 내용을 포함

· 화장품 수입 및 판매기록은 화장품의 유통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보관, 명확한 유통기간이 없는 화장품의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함

· 단, 소매판매용 수입화장품은 판매기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음

[표7] 판매, 리콜 관련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판매기록	수입화장품 명칭, 규격, 수량, 중량, 생산로트번호,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판매일시, 수입업체 명칭 및 연락처, 화장품 회수(리콜)후 처리 방식 등
회수 기록	수입화장품 명칭, 규격, 수량, 생산로트번호,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회수원인, 자기검사 및 분석, 긴급 상황 처리 방식, 후속개선조치 등
보관 서류	구매 판매계약서, 판매 영수증, 출하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자용(自用) 화장품 수화인은 가공 및 사용 기록에 관한 서류를 보관

나. 식품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규제

– (시행) 2016년 7월 식품안전법의 온라인 상 유통되는 식품관리에 관한 법규를 구체화한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网络食品安全违法行为查处办法**'를 발표**

·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수준 향상과 더불어 온라인 상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정

· 특히 2016년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晚会에서 대표적인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어러머饿了麽'의 비위생적인 운영 실태가 적발됨에 따라 동 법의 제정에 가속도가 붙음

· 중국 소비자 협회가 2015년 접수한 온라인 구매관련 불만은 20,083건, 이 중 전자상거래가 95.41%를 차지하는 19,162건, 전년도보다 31.3%p 증가

– (주요 내용)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사 수사방법에서는 입주한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 제공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문화하고 문제 발생 시 공동책임을 짓도록 규정

· 인터넷 플랫폼 제공업체는 해당 플랫폼에 입주한 식품생산 경영업체를 등록备案할 의무가 있으며 온라인상 식품거래의 진실성,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내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

· 그동안 플랫폼 운영자는 매매 양측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한 것

· 또 입주 식품업체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시하고 관련 관리감독 부서에 고발해야 하며,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음

· 이외에 동 법에서는 '16년 10월 1일부로 보건식품, 특수의약품 조제식품, 영유아조제 분유 등은 상품등록증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식약품감독관리부처의 검색페이지에 링크를 걸도록 규정

* 보건식품은 "본 상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음" 을 반드시 표기하고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중 특정영양분 조제식품은 온라인상 거래가 금지

– (주관부처) 온라인 식품안전 수사부처는 등록소재지의 식약품주관부처로 구성

· 인터넷 플랫폼 제공업체와 입주업체의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는 모두 등록자의 식품약품관리부처에서 주관토록 함

· 주관부서는 수사과정에서 현장 검사,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거래데이터, 회계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할 권한도 부여

• 상하이시 식품안전조례

– (시행) 2017년 3월 20일부터 상하이로 들어오는 식품 검사 및 시장유통 관리를 연결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 조례 제정

· 상하이시는 '혀끝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2017년 1월 20일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킴

· 원래 6장이었던 동 조례에다 '식품안전리스크 감사와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등 2장이 추가

· 규정과 처벌수준 모두 대폭 강화

– (주요 내용)

1) 시장 진입기준 강화서

· 식품생산경영 허가와 관련 제품의 생산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진입 기준을 강화해 기준 미달인 식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

· 상하이로 진입하는 식품과 식용 농산품의 식품안전정보 등기제도 개선

· 수입식품 안전정보 감독관리 부서간 상호 통보제도 개선

· 식품과 식용 농산품 저장,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의 등록 관리

· 전 도시 통일된 정보추적 플랫폼을 구축, 중점 관리하는 '식품 및 식용 농산품에 대해 정보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식품생산 경영활동을 감독 관리함

2) 무허가 식당 금지

· 법적 절차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 식당 등은 일괄 금지함

·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에게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장소나 기타지원을 제공하는 업체 및 개인은 법적 처분외에도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여 관련 부서에서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조치

3) 온라인 식품경영활동 규범화

· 온라인 식품교역을 위한 플랫폼 제공자 및 업체 자체 온라인사이트 운영자 등록제도 구비

· 온라인 식품경영 허가 및 정보공시제도의 구체화

·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명시(온라인 식품경영자 등재기준 표준화와 식품안전책임, 샘플링 검사 실시, 식품경영행위와 정보검사 실시, 식품안전신용상태 공시 등 4가지 요구사항 규정

•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제도 실시

– (시행) '16년 10월 1일부 약품관리방식을 영유아 조제분유 산업에 도입하여 해당 산업의 규범화 실현, 저품질 분유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

· 중국 분유 생산 업체는 물론, 중국에 분유를 수출할 계획이 있는 해외 업체들도 자사 브랜드 제품을 중국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품 등록을 해야 함

– (주요 내용) 등록 개수는 업체당 브랜드 3개, 제품 9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 · 유아 성장기에 맞춰 0~6개월을 1단계, 6~12개월을 2단계, 12~18개월을 3단계로 구분함

· 각 분유 제품에 조제성분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분유조제법 등록 성공시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받게 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임

* 등록번호 : YP+연도+제품번호

· 연구개발, 생산, 검역 방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중국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중국 내 분유 유통이 가능함

· 해당 분유 제품에 대한 조제성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 또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문구도 사용금지,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도 엄금

· 생유를 원료로 할 경우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며 적용되는 성장기 즉 1,2,3 단계를 표시해야 함

• 보건식품 정책 <보건식품 허가 및 등록 관리방법>

– (시행)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2호로 공표, '16년 7월부터 시행

· 중국 위생허가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취득 비용 불필요

· 외국 보건 식품 브랜드는 중국 위생허가 CFDA 취득을 위해 50만~100만 위안 가량의 등록비용을 부담해야했으나,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기존과 같은 등록비용이 불필요해짐

· 수입되는 보건 식품의 원료가 허가 원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등록 가능함

· 원료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3년간의 심사를 통해 별도 허가가 필요

· 원료 리스트 : 칼슘, 마그네슘, 칼륨, 망간, 철분, 아연, 셀레늄 구리, 비타민 A, C, D, E, B1, B2, B6, B12, K, 니코틴산, 엽산, 비오틴, 콜린, 판토텐산 등

· OEM 생산 제품 금지 및 과대광고가 금지됨

·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허가되지 않으며, 보건 식품 명칭에 허구, 과장된 단어와 직간접적으로 예방, 치료 기능 등을 나타내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함

• 산시성 수입 식품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 발표

– (시행) 산시성 인민정부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수입 식품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산시성 주요 제품 추적 체계 건설 실시 방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향후 2020년까지 관련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을 밝힘

– (주요 내용) 본 방안은 수입 식품이 많이 유입되는 곳을 위주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될 전망임

· 중국 광둥성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광둥성의 수출입상품의 품질 합격률이 4배 증가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

· 수입 식품 전 과정의 추적화, 수입 분유 및 와인의 중점적인 감독, 수출입 등록제, CIQ[资源(CIQ 자원)] 도입, 수입식품의 품질 안전을 위한 추적 리콜제도 등이 있음

• 광시성 수구검험검역국 广西水口检验检疫局 수입 견과류 품질 검사 강화

– (시행) 광시성 수구검험검역국은 '16년 11월부터 수입 견과류 품질 검사 강화를 시행하여 샘플링을 통한 실험실 검사 추가, 견과류 식품 리스크 관리, 추적성 관리, 소비자 식품 안전 의식교육 등을 실시함

– (주요 내용) 견과류 식품은 현장 관능검사로만 진행하였지만 강화 이후 GB 19300-2014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관능검사를 진행함

· 맛 : 쉰 맛이 나지 않아야 함

· 껍질이 있는 견과 : 곰팡이/%≤2.0, 껍질이 없는 견과 : 곰팡이/%≤0.5

· 이물질 :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

· 과거 관련 데이터가 분산되어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분류 검사 실행을 통해 통관 효율을 높이고 검사 합격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스크 등급을 낮춰주거나 샘플링 검사 비율과 검사 항목을 조정함

· 처음 수입한 식품이나 블랙리스트에 있는 기업의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과 빈도수를 높여 더욱 엄격하게 검사함

· 정기적으로 수입 식품 경영자와 제품 판매 기록 현황을 조사하여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모든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조사함. 이에 만일 수입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품의 시장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임

·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

• 텐진 출입국검역국, 수입 수산물 검증 검역 조건사항 강화

– (시행) 텐진 수출입 검험검역국은 2016년 9월 18일 수산물 수입시 수출국의 담당 검역국이 정식 발급한 검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발표

· 검증 검역서 미비, 검역국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증명서, 검역국 확인 증명서 샘플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불가하다는 것을 발표

– (주요 내용) 검역국이 수입 수산물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등록 관리하고, 공식사이트에 등록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함

· 이에 수입 수산품 생산가공기업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나 등록된 기업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거부됨

– 처음 수입된 제품의 품질안전과 식품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세우는 시스템을 갖춤

· 검역 결과가 불합격으로 중국 수출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통관이 거부됨

– 식품 안전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양서류, 파충류, 수생 포유류 및 기타 양식 수산품 등에 대해서 심사 및 비준 제도를 실시함

· 상기 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서 체결 전, 검역 심사 비준절차를 밟고 '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획득해야 함

– 제품이 반송 또는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수입검증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하는 제품 가운데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이 없는 경우

· 등록이 필요한 수산품 생산기업이 중국 검역국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 수출국의 담당 검역국이 발행한 정식 검역허가증이 없는 경우

· 인체 안전 및 환경보호 부문과 관련해서 불합격된 경우

• 한국산 설탕 세이프 가드 조치 조사 착수

– (시행) 중국은 2016년 9월부터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기존 쿼터제 내 일반 기업에게 적용되는 125% 보다 높은 160%까지 올라갈 수 있음

*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무역 장벽임

• 인삼 비관세장벽 조치 증가

– (시행)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인삼 품목에 대해 비관세장벽 조치를 취할 것을 공표

– (주요 내용) 현재 중국에서는 4~5년근에 대한 분류군을 일반식품으로 분류하나, 6년근 인삼은 의약품 수준의 약재, 보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 중 FTA-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 간편화

– (시행) 중국 해관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수출입 기업들의 보다 쉽고 빠른 통관 심사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간편화를 시행함

– (주요 내용) CO-PASS 시스템에 따라 한 · 중 FTA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CO-PASS 시스템이란 한 · 중 세관이 실시간으로 전자 문건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상호 교환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FTA 특혜 관세 적용 여부를 통보하는 시스템임

–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세관에 도착할 경우 창고료, 물류비 등을 추가 지불해야 했으나, 본 시스템 시행으로 연간 약 6,245억 원이 절약 될 수 있음

– 기존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 검증의뢰를 한 유형은 인증 및 양식 불일치 등의 형식적 오류였음. CO-PASS 도입으로 전자 데이터 심사가 가능해져 원산지증명서 형식 관련 검증요청 감소 예상

[표1] 중국 음료 식품첨가물 카페인 기준(GB 2760–2014)

항목		최대사용량
탄산음료		0.15g/kg
커피	진한 커피음료	≥ 200mg/kg
	저카페인 커피음료	≤ 50mg/kg
차류	홍차	40mg/kg
	녹차	60mg/kg
	우롱차	50mg/kg
	꽃차	40mg/kg
	기타차	40mg/kg

자료원 :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표2] 식품첨가물 이산화유황 기준(GB 2760–2014)

식품분류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g/kg)	비 고
04.01.01.02	표면 처리를 거친 신선 과일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1.02.02	건과일류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1.02.08	당절임 건조 과일	0.3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2	건조 채소	0.2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2	건조 채소 (건조 감자에 한함)	0.4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3	절인 채소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4	채소 통조림 (죽순, 배추절임에 한함)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3.02.02	건조 식용균 및 조류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3.02.04	식용균 및 조류 통조림 (버섯 통조림에 한함)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4.01.04	부죽류(부죽, 유피 등 포함)	0.2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5.02.03	견과 및 씨앗류 통조림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5.0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및 캔디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6.03.02.01	생습 밀가루 제품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6.05.01	식용 전분	0.03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1	설탕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2	전분당(과당, 포도당, 맥아당, 일부 전화당 등)	0.04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5	조미당액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2.10.02	반고체 복합조미료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4.02.01	과채주스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농축 과채주스는 농축 배수에 따라 환산,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
14.02.03	과채주스류 음료	0.05	
15.03.01	와인	0.25g/L	스위트 와인 및 과실주 계열 제품의 최대사용량은 0.4g/L,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5.03.03	과실주	0.25g/L	
15.03.05	맥주 및 맥아음료	0.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식품분류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g/kg)	비 고
04.04.01.04	부죽류(부죽, 유피 등 포함)	0.2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5.02.03	견과 및 씨앗류 통조림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5.0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및 캔디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6.03.02.01	생습 밀가루 제품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6.05.01	식용 전분	0.03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1	설탕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2	전분당(과당, 포도당, 맥아당, 일부 전화당 등)	0.04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5	조미당액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2.10.02	반고체 복합조미료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4.02.01	과채주스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농축 과채주스는 농축 배수에 따라 환산,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
14.02.03	과채주스류 음료	0.05	
15.03.01	와인	0.25g/L	스위트 와인 및 과실주 계열 제품의 최대사용량은 0.4g/L,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5.03.03	과실주	0.25g/L	
15.03.05	맥주 및 맥아음료	0.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자료원 :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표3] 식품첨가물 아스파탐 기준(GB 2760–2014)

식품분류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 (g/kg)
01.01.03	인공유	0.6
01.02.02	풍미 발효유	1.0
01.03.02	인공유 분말 및 조제버터 분말	2.0
01.05	휘핑크림(무염버터) 및 유사제품 (01.05.01 휘핑크림 제외)	1.0
01.06.01	비숙성 치즈	1.0
01.06.05	치즈 유사품	1.0
01.07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즉석 풍미 식품 및 사전제조 품(아이스크림 및 풍미 발효유 제외)	1.0
02.03	02.02류 이외의 지방 유화 제품,혼합 및(또는) 조미된 지방 유화 제품 포함	1.0
02.04	지방류 디저트	1.0
03.0	냉동 음료(03.04 식용 얼음 제외)	1.0
04.01.02.01	냉동 과일	2.0
04.01.02.02	견과일류	2.0
04.01.02.03	식초, 기름 또는 소금에 절인 과일	0.3
04.01.02.08	당절임 건조 과일	2.0
04.01.02.09	장식용 과채	1.0
04.01.02.10	과일 간식, 과일맛 액상 간식 포함	1.0
04.01.02.11	발효한 과일 제품	1.0
04.01.02.12	익히거나 기름에 튀긴 과일	1.0
04.02.02.01	냉동 채소	1.0
04.02.02.02	건조 채소	1.0
04.02.02.03	절인 채소	0.3
04.02.02.04	채소 통조림	1.0
04.02.02.05	채소 퓨레(소스), 토마토 소스 제외	1.0
04.03.02.06	기타 가공 식용균 및 조류	1.0
04.05.02	가공 견과 및 씨앗류	0.5
05.01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코코아 버터 초콜릿 및 제품 포함	3.0
05.02.01	껌 베이스 캔디	10.0
05.02.02	껌 베이스 캔디 이외의 기타 캔디	3.0
05.04	장식 캔디(모형이나 케이크 장식용),삼단 장식 (비 과일 재료) 및 시럽	1.0
06.06	시리얼, 압축귀리(조각) 포함	1.0
06.09	곡류 및 전분류 디저트(라이스 푸딩, 카사바 푸딩)	1.0

자료원 :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가. 화장품 현황 : 화장품 수입 불허, 최근 3년간 지속 증가세

– 중국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간 수입 화장품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화장품 수입 불허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임

· 화장품의 경우 식품 보다 검역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6년 200건을 상회했음

[표1] 중국내 화장품 수입 불허건수(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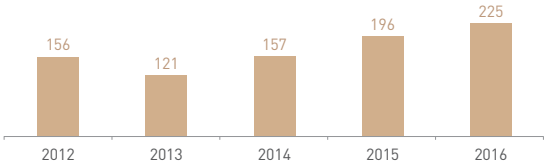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 2016년 수입 불허 건수 기준으로는 1위 한국, 2위 호주, 3위 타이완 순임

· 2016년 수입 불허가 가장 급증한 나라는 프랑스로 전년 대비 260% 증가했음

·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원인은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검역도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4년 9.8%에서 2016년 27%로 급증했으며, 2015년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음, 2016년 1위 프랑스와의 격차를 줄이며 2위 유지

[표2]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건수 최다 상위 5개국(2012~201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한국	9	125.0	5.8	9	0.0	7.4	31	244.4	19.7	26	-16.1	13.3	58	123.1	25.8
호주	1	25.0	0.6	3	200.0	2.5	4	33.3	2.5	30	650.0	15.3	27	-10.0	12.0
타이완	15	200.0	9.6	13	-13.3	10.7	40	207.7	25.5	13	-67.5	6.6	25	92.3	11.14
프랑스	75	1275.0	48.1	15	-80.0	12.4	17	13.3	10.8	5	-70.6	2.6	18	260.0	8.0
영국	1	25.0	0.6	2	100.0	1.7	4	100.0	2.5	7	75.0	3.6	13	85.7	5.8
총계	156	40.5	100.0	121	-22.4	100.0	157	29.8	100.0	196	24.8	100.0	225	14.8	100.0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주: 2016년 기준 중국의 수입 화장품 불허건수 상위 5대국 기준으로 정리

[표3]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건수 상위 5개국 순위(2012~2016)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위	프랑스	미국	타이완	독일	한국
2위	타이완	프랑스	한국	호주	호주
3위	한국	독일	미국	한국	타이완
4위	이탈리아	타이완	프랑스	타이완	프랑스
5위	불가리아	한국	스위스	태국	영국

자료원: 상동

– 유형: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제출서류 미비'로 나타남

·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원인으로는 ① 제출서류 미비 ② 포장, 라벨링 불합격 ③ 미생물수 초과로 확인됨

· 2016년 화장품 수입 불허 원인으로 제출서류 미비가 눈에 띠게 증가했음. 특히 중국 검역 당국은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인증서, 등록증서 유무뿐만 아니라 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시 필요한 등록증서는 취득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검역이 엄격해지고 있음

[표4] 중국의 대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유형(2012~2016)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계	비중 (%)
미생물수 초과	0	8	8	3	6	25	18.2
감관 검사 불합격	0	0	0	0	0	0	0.0
성분 불합격	4	0	1	4	7	17	12.4
제출서류 미비	0	0	2	10	39	54	39.4
유통기한 초과	0	1	0	0	0	1	0.7
포장, 라벨링 불합격	4	0	15	7	4	30	21.9
증서와 제품 불일치	1	0	5	2	2	10	7.3
총 계	9	9	31	26	58	137	100.0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 배경: '화장품 안전기술규범(15.12월 개정)'이 2016년 1월 1일 시행됨

·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위생규범(2007년 제정)의 개정판으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용 금지 · 제한 · 허가 성분이 수정됨

· 화장품 검사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되었으며, 60가지 사용 금지 · 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이 새로 추가됨

* 현지 인증 관련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 2016년 12월부터 우리기업의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 이 밖에도 '수입화장품 중국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이 2017년 3월 1일부 시행되고 있어 수입화장품 수입상, 판매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5]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

구 분	총 합	추 가	수 정	삭 제
사용금지 성분	1388개	133개	137개	–
제한 성분	47개	1개	31개	27개
허가 방부제	51개	–	14개	5개
허가 자외선 차단제	27개	–	6개	1개
허가 착색제	157개	1개	69개	–
허가 염색제	75개	–	63개	21개

자료원: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 유형별 사례

1. 인증서류 미비 사례

– 제품명 : Waterproof eye liner

제조업체	S사
검역소	안후이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발표의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응방안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은 통관 시 반드시 위생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 제품명 : 가글

제조업체	P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응방안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은 통관 시 반드시 위생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자료원 : 상동

2. 제품 품질보증 기간 만료

– 제품명 : Eyeshadow

제조업체	G사
검역소	하이난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위생부령 제3호) – 제3장 화장품 경영의 위생감독 – 제13조 화장품을 경영하는 기관 및 개인은 아래의 화장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 (5) 사용기한을 초과한 화장품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15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과 관련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소각을 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는 반송 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서 기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 검사검역 합격을 거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대응방안	수출 전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이 넉넉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3.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 제품명 : Hand Balm

제조업체	A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응방안	제품 수출 전에 검역신고 시 제출 할 위생허가증이 수출하는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자료원 : 상동

4.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 제품명 : 샴푸

제조업체	B사
검역소	샤먼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항목과 검사 요구를 확정해야 하고, 샘플을 관련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검사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보고를 발급한다.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3 미생물학지표요구 [표1] 화장품 중 미생물 지표 제한치
대응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미생물 지표 제한치를 준수해야 함

미생물 지표	제한치	비고
균락총수 (CFU/g 혹은 CFU/ml)	≤500	눈부위용 화장품, 입술부위용 화장품, 아동용 화장품
	≤1000	기타 화장품
곰팡이균 및 효모균 총수(CFU/g혹은 CFU/ml)	≤100	
내열성대장균군/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황색포도구균/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녹농균/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 제품명 : 에센셜 쿠션

<table>
<tr><td>제조업체</td><td>I사</td></tr>
<tr><td>검역소</td><td>베이징</td></tr>
<tr><td>조치상황</td><td>반송</td></tr>
<tr><td>관련법규</td><td>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3 미생물학지표요구

[표1] 화장품 중 미생물 지표 제한치

<table>
<tr><th>미생물 지표</th><th>제한치</th><th>비고</th></tr>
<tr><td rowspan="2">균락총수 (CFU/g 혹은 CFU/ml)</td><td>≤500</td><td>눈부위용 화장품,
입술부위용 화장품,
아동용 화장품</td></tr>
<tr><td>≤1000</td><td>기타 화장품</td></tr>
<tr><td>곰팡이균 및 효모균 총수(CFU/g혹은 CFU/ml)</td><td>≤100</td><td></td></tr>
<tr><td>내열성대장균군/g (혹은 ml)</td><td>검출되어서는 안됨</td><td></td></tr>
<tr><td>황색포도구균/g (혹은 ml)</td><td>검출되어서는 안됨</td><td></td></tr>
<tr><td>녹농균/g (혹은 ml)</td><td>검출되어서는 안됨</td><td></td></tr>
</table>
</td></tr>
<tr><td>대응방안</td><td>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미생물 지표 제한치를 준수해야 함</td></tr>
</table>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5. 상품 오염

– 제품명 : 비누

제조업체	C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10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신청을 접수한 후, 수입화장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진행하고 현장검사, 샘플 추출 및 샘플 보관, 실험실 검사, 증거 제시 등을 포함한다. – 제11조 현장검사 내용은 수송증명서 일치상황, 제품 포장, 라벨 지면 양식, 제품감관성상, 운송 도구, 컨테이너 또는 보존 장소의 위생 상황을 포함한다. – 제15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과 관련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소각을 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는 반송 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서 기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 검사검역 합격을 거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대응방안	상품 운송 시 운송 도구, 컨테이너, 보존 장소 등 주변 환경의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6. 라벨 불합격

– 제품명 : 비누

제조업체	K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포장 화장품 완제품을 판매할 때 앞의 네 가지 사항 이외에 중문라벨 견본인쇄물과 외국어라벨 및 번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소비품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표시》 1. 범위 GB 5296의 본 표준은 화장품 판매포장의 통용 표시 형식, 기본 원칙, 표시 내용과 요구에 대해 규정한다. 본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6. 필수 표시 내용 6.1 화장품의 명칭 6.2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6.3 정함량淨含量 6.4 화장품 성분표 6.5 품질보증기한 6.6 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 위생허가증 번호와 제품비준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7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수입화장품위생허가 등록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8 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용도화장품 비준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9 모든 국가 관련 법률과 법규 요구와 화장품 특성에 따른 필요가 있을 시, 화장품 판매포장의 가시면에 안전경고용어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경고용어는 "주의注意" 또는 "경고警告" 등의 지시문구로 작성한다.
대응방안	중국 수출 화장품은 반드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소비품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표시》에서 명시한 필수 표시 내용 및 표기방법을 준수해야 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7.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 제품명 : 염색약

제조업체	K사
검역소	광둥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항목과 검사 요구를 확정해야 하며 샘플을 관련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검사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보고를 발급한다.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4 유해물질 제한치 요구 [표2] 화장품 중 유해물질 제한치
대응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화장품안전 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유해물질 제한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유해물질	제한치(mg/kg)	비 고
수은	1	유기수은방부제를 함유한 눈부위 화장품은 제외
납	10	
비소	2	
메탄올	2000	
카드뮴	5	
디옥산	30	
석면	검출 금지*	

자료원 :'15~'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17년)

8. 배합금지 물질 검출

– 제품명 : 오렌지향 치약

제조업체	K사
검역소	광둥성 주하이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2008)》 [표1] 치약 중 사용 금지물질
대응방안	치약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2008)》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명칭	영문 명칭
벤제토늄클로라이드	benzethonium chloride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9. 불소 함량의 국가 표준 요구 불일치

– 제품명 : 미백치약

제조업체	D사
검역소	샤먼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 (GB 8372–2008)》 4. 요구 4.3 감관, 이화 지표
대응방안	치약 제품 중 불소함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2008)》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구분	내용
불소 총 함량 % (최소 허용치는 오직 불소 함유 충치 방지 치약에만 적용됨)	0.05 ~ 0.15(일반 치약의 경우) 0.05 ~ 0.11(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자료원 : 상동

10. 통관 및 검역

– 제품명 :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A사
검역소	–
조치상황	수출중단
관련법규	· 기존 중국 화장품 용기 생산업체로 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해왔는데 통관을 이유로 거래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음('17.3.13) · 차선으로 중국에 다른 화장품 용기 제작업체를 찾아 견적을 받아봤을 때 사드배치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시함(15% 상승) · 또한 통관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어 한국으로 수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음
대응방안	–

자료원 : 통관관련 기업애로사항, KOTRA (2017)

– 제품명 : 마스크팩

제조업체	E사
검역소	–
조치상황	수출중단
관련법규	· 최근 사드배치 발표 후 화장품 품질 문제 제기 통관 지연 (마스크팩 제품에서 분변대장균군 검출, 유해물질 함량초과 등) 수출 오더 취소
대응방안	마스크팩 유해물질 함량기준 준수

자료원 : 상동

나. 식품 (현황) 식품 수입 불허, 2012년 이후 5년 연속 2천 건 웃돌아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 간 식품 수입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식품 수입 불허건수가 2천 건을 웃돌며 검역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식품 수입 불허건수는 2016년 3,038건으로 2010년 1,69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음

· 특히 2014년에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3,504건이 수입 불허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음

· 2015년은 전년 대비 불허건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3천 건을 돌파해 중국 정부의 수입 식품 검역 강화는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1] 중국내 식품 수입 불허건수(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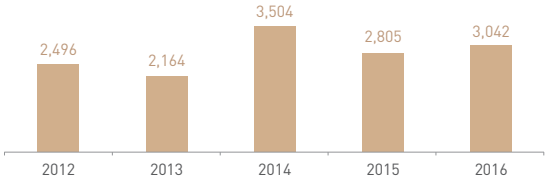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 2016년 식품 수입 불허건수 1위 타이완, 한국은 4위

· 2016년 수입 불허 건수는 타이완이 724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국가별 수입 불허 건수 비중은 타이완이 23.8%로 가장 컸으며, 미국, 일본, 한국은 6%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임

· 특히, 2014년 전체 수입 불허 건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61.9%로 급증했으며, 한국, 타이완, 일본, 호주는 2배 이상 급증

* 2013년 뉴질랜드 분유 파동 이후 수입 식품 안전을 위한 검역 강화의 결과로 추정됨

[표2] 중국의 식품 수입 불허 건수 최다 상위 5개국(2012~201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타이완	409	106.6	16.4	380	-7.1	17.6	768	102.1	21.9	733	-4.6	29.3	724	-1.2	23.8
미국	308	45.3	12.3	175	-43.2	8.1	250	42.9	7.1	152	-39.2	6.1	198	30.3	6.5
일본	60	5.3	2.4	54	-10.0	2.5	143	164.8	4.1	171	19.6	6.8	182	6.4	6.0
한국	82	3.8	3.3	97	-18.3	4.5	234	141.2	6.7	104	-55.6	4.1	180	73.1	5.9
말레이시아	138	-5.5	5.5	148	7.2	6.8	177	19.6	5.1	153	-13.6	6.1	143	-6.5	4.7
총계	2496	43.3	100.0	2164	-13.3	100.0	3504	61.9	100.0	2508	-28.4	100.0	3042	21.3	100.0

자료원 :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주) 2016년 기준 중국의 수입 식품 불허건수 상위 5대국 기준으로 정리

– 타이완은 2012년부터 연속 5년간 수입 불허건수 1위 차지, 한국은 2014년에 5위권 내로 처음 진입했으며 2015년 8위, 2016년 4위 기록

[표3] 중국의 수입 식품 불허 건수 상위 5개국 순위(2012~2016)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2위	미국	프랑스	미국	일본	미국
3위	프랑스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4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미국	한국
5위	호주	독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자료원 : 상동

– (유형) 최근 5년간 한국 식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미생물수 초과'로 확인됨

· 한국 식품 수입 불허 3대 유형은 ① 미생물수 초과 ② 성분 불합격 ③ 포장, 라벨링 문제로 나타남

· 특히 2015년부터 '미생물수 초과'로 인한 수입불허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식품 수입불허 건수 673건 가운데 '미생물수 초과'로 인한 수입불허는 198건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품 안전 문제와 관련된 성분, 미생물 등이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포장, 라벨링 문제도 검역에 자주 단속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표4] 중국의 대한국 식품 수입 불허 유형(2012~201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미생물수 초과	34	41.5	26	26.8	27	11.8	33	31.7	78	48.4	198	29.4
감관 검사 불합격	0	0.0	5	5.2	0	0.0	11	10.6	0	0.0	16	2.4
성분 불합격	17	20.7	17	175	50	21.8	19	18.3	55	34.2	158	23.5
제출서류 미비	14	17.1	10	10.3	26	11.4	11	10.6	0	0.0	61	9.1
유통기한 초과	12	14.6	29	29.9	3	1.3	1	1.0	11	6.8	56	8.3
포장, 라벨링 불합격	2	2.4	9	9.3	117	51.1	23	25.0	16	9.9	170	25.3
증서와 제품 불일치	3	3.7	1	1.0	6	2.6	3	2.9	1	0.6	14	2.1
총계	82	100.0	97	100.0	229	100.0	104	100.0	161	100.0	673	100

자료원 :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표5] 중국의 대한국 식품 수입 불허 유형(201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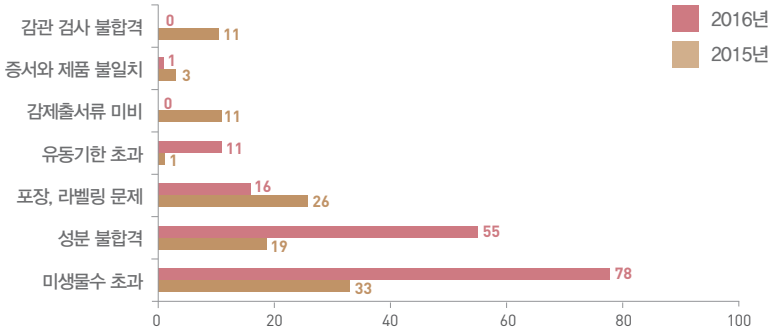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 (배경) 소비자 안전 중시, 법제 정비 가속화,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끊이지 않은 식품 안전문제로 인해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두

· 또한, 최근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안전의식 확산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식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해왔음

·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 식품을 선호해왔으나 2013년 청정 낙농국으로 유명한 뉴질랜드산 분유 파동 이후 수입식품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과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됨

[표6] 중국내 주요 식품 안전사고

연 도	주요 사건
2008	멜라민 분유 파동
2009	대두증 분유 파동
2010	성조숙증 분유 파동
2011	피혁 분유, 클렌뷰터롤 돼지고기 파동
2012	공업용 젤라틴 약용캡슐, 공업용 소금 간장, 젤라틴 요거트 사건
2013	뉴질랜드 박테리아 분유 파동
2014	유통기한 지난 육류 유통 사건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관련하여 2012년부터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규정 및 감독 규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독 및 관리 시스템도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2015년 개정된 식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생산–가공–판매'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음

· 관리감독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출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평가센터'를 개소(2015년 12월)하고,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음

* 2016년 11월부터 "수출입식품화장품안전리스크 경고" 시행. 홈페이지에 불량제품 기록이 있는 수입상, 해외제조상, 해외수출상 명단 발표

[표7]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입 식품 관련 법규 시행 현황

시행 시기	주요 법규
2012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관리규정,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제출관리 규정, 식품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
2013	포장식품 영양표시 통칙
2014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실시세칙
2015	식품리콜제 관리법, 식품안전법 개정
2016	수입식품 접촉상품 검험 감독관리업무 규범,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리방법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유형별 사례

1.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 제품명 : 조미김

제조업체	E사
검역소	푸젠성
조치상황	반품
관련법규 (내용)	· 균총수 기준치 초과 (GB 19643–2005에 의거) – 김의 균락총수 최대허용치는 30,000cfu/g 임
대응방안	GB 19643–2005 기준에 의거한 균락총수 최대허용치를 준수해야 함

자료원 :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한국무역협회 (2016)

– 제품명 : 팥 통조림

제조업체	B사
검역소	산둥성
조치상황	반품
관련법규 (내용)	· 규정위반물질 소르빈산칼륨 사용 (GB 2760–2014에 의거) – 콩제품의 소르빈산 최대허용치는 1.0g/kg 임
대응방안	GB 2760–2014 기준에 의거한 소르빈산 최대허용치를 준수해야 함

자료원 : 상동

– 제품명 : 탄산음료

제조업체	C사
검역소	저장성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내용)	· 안식향산 기준치 초과 (GB 2760–2014에 의거) – 탄산음료의 안식향산 최대허용치는 0.2g/kg 임
대응방안	GB 2760–2014 기준에 의거한 인식향산 최대허용치를 준수해야 함

자료원 : 상동

– 제품명 : 유자차

제조업체	D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내용)	식품 첨가물 젖산칼륨 사용범위 초과 (GB 2760–2014에 의거) – 차류의 젖산칼륨 사용은 금지됨
대응방안	GB 2760–2014 기준에 의거한 젖산칼륨 사용이 없어야 함

자료원 :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한국무역협회 (2016)

– 제품명 : 과자

제조업체	E사
검역소	–
조치상황	법적 처벌
관련법규 (내용)	중국 내 간식류 대표 온라인마켓인 이하오디엔一号店에서 판매 중인 과자 제품의 이산화유황 기준치가 초과되어 해당 제품 제조사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됨
대응방안	이산화유황은 기준치에 적당량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미미하나, 그 양을 초과할 경우, 호흡곤란 및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수출 전 자체 검역단계가 필요

자료원 : 상동

– 제품명 : 주류

제조업체	F사
검역소	–
조치상황	소송
관련법규 (내용)	가소제, 카페인은 중국 내에서 안전성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첨가물로, 위험성 표시 및 기준치 검사에 있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F사 주류에서 가소제가 대량검출 됨
대응방안	중국 음료시장 1위 기업인 코카콜라를 상대로도 법적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국시장 수출 전 사전 점검단계를 강화할 필요성 존재

자료원 :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거부사례 동향 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 제품명 : 떡볶이용 떡

제조업체	G사
검역소	–
조치상황	수입규제
관련법규 (내용)	농산품 가공품으로 식품 첨가물과 같은 성분 기준치 초과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제품 특성상 수분 함유량이 많아 통관검역 미생물 기준치 초과로 문제가 발생 · 중국 식품 표준(GB 7099–2015) – 떡 및 빵 제품 균락총수 최대 허용치 : 10,000cfu/g 이상 – 곰팡이 기준치 : 150cfu/g 이하
대응방안	최근 중국 내 유명 식품 제조사인 커디에서 제조한 냉동 식품 제품의 균락총수 수치가 기준치 대비 25배 이상 검출되어 중국 관리 당국에 규제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식품에 대한 미생물 및 병원균에 대한 주의가 높아진 점을 고려 사전관리가 필수적임

자료원 :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거부사례 동향 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2. 라벨링/포장

– 제품명 : 감귤주스

제조업체	E사
검역소	베이징
조치상황	반품
관련법규	· 라벨 불합격 (GB 7718–2011에 의거) – 식품라벨은 포장재(용기)와 분리해선 안됨 – 규범화 중문사용(상표는 예외) – 병음이나 소수민족 문자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됨 – 포장최대면적 관련하여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 이상 – 판매단위에 따라 식품라벨 부착
대응방안	GB 7718–2011 기준에 의거한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함

자료원 :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한국무역협회 (2016)

– 제품명 : 초콜릿 시럽

제조업체	F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 라벨 불합격 (GB 7718–2011에 의거) – 식품라벨은 포장재(용기)와 분리해선 안됨 – 식품라벨은 규범화된 중문라벨 사용(상표는 예외) – 병음(발음기호)이나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 사용가능하나 한자보다 크게 표기되면 안됨 – 표면면적 35㎠ 이하 경우 라벨 문자, 숫자 등 높이 1.8mm 이상
대응방안	GB 7718–2011 기준에 의거한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함

자료원 :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한국무역협회(2016)

3. 통관 및 검역

– 제품명 : 인삼주, 홍삼주

제조업체	T사
검역소	–
조치상황	통관지연
관련법규	· 통관지연 설 명절 전 2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는데 세관의 추가 서류 제출로 통관이 지연되어 명절 이후에 바이어에게 제품이 인도됨. 중국 바이어가 제품 수입에 따른 부담감을 느껴 발주중단 상태 · 면세점 매출 감소 매출 절반 이상이 면세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면세점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제주도 면세점의 경우 3월 매출이 전무)
대응방안	–

자료원 : 통관 관련 기업애로사항, KOTRA (2017)

– 제품명 : 유제품

제조업체	G사
검역소	–
조치상황	수입정지처분
관련법규 (내용)	2016년 이미 견본제품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유제품이 질검총국으로부터 수입정지처분 통보를 받았는데,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중국 보호무역의 영향으로 추정됨
대응방안	중국시장에 분유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중국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함. 또한 분유 제품에 대한 조제성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불확실한 효능 기재를 엄금하고 있기에 사전 조치가 필수적임

자료원 :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거부사례 동향 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Chapter 3

對 중국 화장품 및 식품 수출 절차

[표1] 화장품 수출절차 도표

수출계약	상표등록	제품 행정 허가 신청	수출 통관 및 선적	현지통관
거래조건 협의 및 계약	1.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 2. 통상의 출원 절차 중국 상표국 (제품허가 신청과 동시 진행가능)	시험기관의 검사 및 기술 심사 *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수출 신고 및 선박	세관검사: 중국 해관 검역 검사: 중국 질량검역검험총국

자료원 : 각국별 수출절차조사, 중국, 대한화장품협회 (2017)

가. 상품 등록

상품 등록의 개념

-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발명 주체와 무관하게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관련 권리를 가지게 됨(선등록주의)
- 이에 따라 중국에서 '짝퉁 제품'이나 브로커들이 상표를 선점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
-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 상표의 사전 검색 및 신속한 상표 출원이 중요

*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여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중국 상표국 등록 절차(제품허가 신청과 동시 진행가능)

– 소요 시간 및 비용

· 등록신청 예상소요기간은 18개월이지만, 실제로 2~3년 소요

· 상표등록 행정비용은 1,000위안/건이며, 현지 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1,000~5,000 위안/건의 비용이 발생

[표2] 등록 절차

단계	주요내용
1) 상표 예비 검색	– 소요기간 : 2~7일 (상표국 홈페이지 열람 확인)
2) 상표 신청	– 서류제출 및 신청 (사업자등록증 및 중문 번역본)
3) 상표형식 심사	– 소요기간 : 1~2개월 (제출한 서류의 규정 부합여부 심사)
4) 상표접수통지서 발급	– 형식심사 통과시 '상표접수통지서' 발급 (형식심사 미통과시 수정 후 재접수)
5) 상표실질검사	– 소요기간 : 12개월 (상표법 규정 여부 심사, 기 등록된 상표와 중복 여부 심사)
6) 상표공고	– 소요기간 : 3개월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효력 발생)
7) 등록증 발급	– 등록 결정 후 발급

중국 상표국 등록 절차(제품허가 신청과 동시 진행가능)

– 중국 현지 상표출원 시 주의사항

· 상표실질검사에 따른 거절 결정 시 불복 기간이 짧은 점에 유의

* 복심(재심) : 거절결정 후 15일 이내(상표평심위원회)

* 복심 불복 시 재판 : 30일 이내(중국인민법원)

· 외국인은 상표대리회사를 통해 상표 출원 업무를 위탁해야 하나, 진입 장벽이 낮아 관련 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점에 유의

→ 선등록 검색 등 중요 사항의 판단에 필요한 국제 상표 대리 경험, 불복 시 소송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리회사 선정

국제 상표등록 제도 절차

– 국제 상표등록 제도 기본특징

·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므로 한국의 상표를 국제출원하면 중국에서도 동일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 하나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본국 관청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라고 함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장점

–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의 의정서 체약국에서 상표권을 취득 가능

– 상표권의 유지 관리가 용이

– 각 체약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는 한 그 국가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리인 비용이 절감됨

[표3]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에 의한 절차와 통상의 출원절차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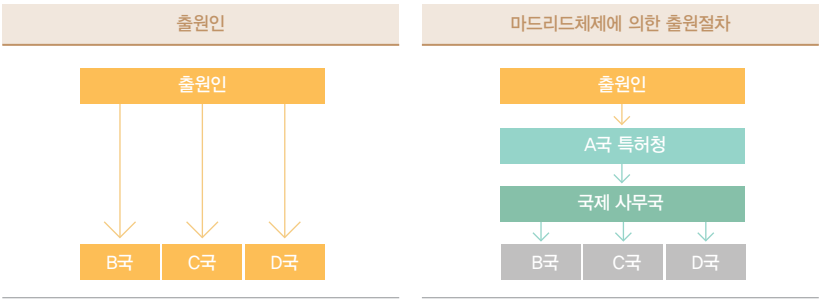

자료원 : 특허청

[표4] 국제 상표등록 절차

자료원 : 상동

– 국제 상표출원 작성시 주의사항

· 국제출원서의 표장 이미지, 폰트, 색상 등이 국내 상표와 동일하고, 상표 적용 범위는 국내상표권 범위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특허청 '합치심사'에서 국내상표와 국제출원상표 일치 여부 판단

· 한국 특허청 수수료와 별도로 국제사무국 수수료를 따로 납부

*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 수수료자동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 국제등록일부터 5년 내 국내 기초출원(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국제 상표출원까지 효력 상실

* 제3자가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을 소멸시켜 국제출원을 무효화시키는 '집중 공격' 주의

· 한국 특허청의 국제출원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 접수할 때 한국 특허청 접수 시점에 국제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

나. 제품 행정허가 신청

신청자료 준비	1. 수권서 등록	CFDA 인터넷 신고	2. 시험검사 (행정허가심사)	3. CFDA 기술 심사	허가증 제작	허가증 발급
관련기관	CFDA 행정 접수 서비스 센터	CFDA	중국 내 공식지정기관 33곳	CFDA 보건식품 심사평가센터	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소요시간	5일	처방 작성 등 허가 관련 서류 출력가능, 심사진도, 위생허가 취득 안내 확인가능	특수: 약 4~8 개월 비특수: 약 2개월	특수: 심사 90일 비준 20일 비특수: 심사 20일 (비준: 평선위원회 '허가'필요)	10일	

자료원 : 각 국별 수출절차조사(중국), 대한화장품협회(2017년)

CFDA 수권서 등록

– 전체 절차

·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지정 및 등록 신청

· 등록 완료 및 CFDA 인터넷 ID/PW 발급

– 在중국 신고책임회사 관련 Tip

1.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란?

· 위생허가 신청 책임회사, 민 · 형사상 책임 및 모든 서류에 대한 책임부담

2.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

· 신청자는 하나의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만 지정 가능

· 추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나 변경하는 시기에 따라 변경 절차가 상이함

3.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위임서류: 수권서, 접수수권서

·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확인 서류: 영업집조 (사업자등록증, 회사 직인 날인)

· CFDA 신고시스템 신청 : ID/비밀번호의 신청표 →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제출

* 위생허가 심사 진도 등을 확인 가능, 인터넷 신고 시스템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4. 수권서, 접수수권서의 작성 주체

· 수권서 : 위생허가 신청 권한을 위임함을 증명하는 문서

· 접수수권서 : 관련 권한을 위임받음을 증명하는 문서

→ 따라서 수권서는 한국 내 공증을 받아 위생허가 신청 회사에서,
수권접수서는 중국 내 공증을 받아 재중국 신고책임회사에서 작성

– 주의 사항

· 제출하는 서류 간 내용이 일치하도록 기재에 유의

· 국내 위생허가 신청 회사 명칭 및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국내 제조판매증명서,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명칭, 주소, 법인대표

·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를 지정 시 위생허가 경력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해야하며, 대기업은 주로 중국 지사를 지정함, 이외에 중국 내 판매 협력업체, 대리업체, 법률사무소 등을 지정

행정허가 심사

– 전체 절차

· 행정허가 검사신청 및 검사

· 검사완료 및 검사보고서 발급

– 정의

· 중국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화장품 품목별로 수행하는 미생물 검사, 중금속 함유 등의 위생화학 검사, 독성 시험, 인체 안전성 검사, 자외선 차단효과 인체 검사

·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은 33곳의 검사기관 공식 지정, 기관별 검사 항목이 다르므로 검사신청 시 주의

· 사전 준비자료

1) CFDA 신고 시스템 상 다운로드 :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 신청표, 제품 처방

2) 검사대상 제품 견본 및 사용설명서 첨부

– 주의 사항

· 사용원료의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 수록 여부 확인

* 중국에서 출시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CFDA에서 정리(8,783개)

· 사용원료가 '화장품 위생규범'의 사용금지 · 제한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2016년 12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새롭게 적용

· 검사기관에 제품 견본을 제출한 이후에는 제품 교체 불가능

· 검사기관에서 견본품 중 하나를 밀봉하여 CFDA에 송부하기 때문에 견본제출 전에 미리 성분표, 포장, 설명서 등의 내용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상세하게 검토 필요

CFDA 기술심사

–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규정.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류의 요구사항'은 수입화장품 등록 및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내용을 규정

[표5]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구비 서류 리스트

순번	서류명	유형	준비 주체
01	수입화장품행정허가신청표	ALL	신청회사
02	제품중문명칭과 명명근거	ALL	신청회사
03	제품처방	ALL	신청회사
04	생산공정의 간략한 서술 및 공정도	ALL	신청회사
05	제품 품질 안전 통제 요구	ALL	신청회사
06	제품라벨, 제품설명서 : 중국시장 전용포장 설계가 있을 경우 제품포장설계 함께 제출	ALL	신청회사
07	화장품행정허가 검사 의뢰 시의 제출 서류	ALL	신청회사
0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인정한 허가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ALL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
09	제품 중 안전위험물질 존재가능성이 있는 것은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	ALL	신청회사 및 검사기관
10	육모, 건미, 가슴류 제품 신청 시 효능성분 및 사용근거에 관한 과학문헌자료	ALL	신청회사
11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수권서 사본 및 재중국 신고 책임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회사 직인 날인	특수	신청회사 및 재중국신고 책임회사
12	화장품사용원료 및 원료원산지가 광우병 구역의 고위험물질 제한요구에 부합된다는 승낙서	ALL	신청회사
13	제품의 생산국 또는 원산국 자유판매 증명 서류	ALL	신청회사
14	허가검사기관에서 봉인한 미개봉 시판 제품 견본 1개	ALL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
15	제품 기술요구	ALL	신청회사
16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시스템 아이디 및 패스워드 신청표	ALL	신청회사
17	위탁가공협의서 및 실제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 우량생산규범 증명서류 혹은 생산기업 소재국(지역) 법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화장품 생산 자격증명서	ALL	신청회사 및 (신청기업의) 실제 제조사
참고	화장품행정허가검사수리통지서	ALL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
참고	CFDA수리통지서	ALL	CFDA행정 서비스센터

자료원 :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구비서류, 대한화장품협회 (2017)

다. 수출통관 및 선적 ➤ 통관 절차

단계	주요내용
1) 통관서류 준비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배송 증명서(Delivery Letter) – 리플릿, 카탈로그 등의 관련서류 –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 신용장(Letter of Credit, 필요시)
2) 관세사 / 포워딩 업체선정	– 관세사(수출신고필증 발급) – 포워딩 업체(선적스케쥴 확인)
3) 적재	– 포워딩 업체 진행
4) 바이어 서류 전달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제품성분표(MSDS) – 제조공정도
5) 수출 신고	– 국세청(수출과)

자료원 : 화장품 수출 가이드 북,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017)

라. 현지통관 ➤ 현지통관 절차

단계	주요내용	
1) 도착/반입	– 주요 공항 :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청두 – 주요 항만 : 상하이, 닝보, 광저우, 칭다오, 톈진	
2) 수입신고	– 화장품 허가증 또는 등록증 – 계약서(Sales Contract) – 영수증 – 해관신고/검역신고 위탁서	– 수권서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대리협의서
3) 화물검사	– 실제 화물과 세관에 신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	
4) 과세 및 납세	– 기초화장품 : 2% – 소비세 : 0~15%	– 기초화장품 제외 : 6.5% – 증치세 : 17%
5) 반출	–	

자료원 : 상동

세관검사 : 중국 해관

–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과 실제 수입 화물의 유형, 원산지, 수량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밀수 등 위법 행위 및 세금 징수 감독

– 수입 신고 자료

· 기본 제출서류

· 무역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대리협의서(화주–수입화장품 경영기관), 수권서(수입화장품 경영기관)

· 필요시 제출 서류 : 해관신고, 검역신고위탁서(통관 대행업체 위탁시), 위생허가증(최초 수입시)

검역검사 : 중국 질량검역검험총국

– 제품포장, 외관 상 품질, 보존장소의 위생상황 등을 현장 확인하고, 필요시 미생물, 중금속 오염 등의 원인에 따른 실험실 검사수행

– 처음 화장품을 수입할 때 많은 샘플을 추출하여 검역검사를 수행하도록 중국 법령에 규정된 점에서 주의 필요

* 근거 규정 :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제 13조 … 아래의 상황은 더욱 엄격하게 샘플을 뽑아야 한다 : (1) 첫 수입하는 경우, (2) 이전에 품질 안전 문제가 있었던 경우, (3) 수입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

가. 對 중국 식품 수출 통관 절차

절차		기간	비용	담당 기관	총 기간
통관 전 포장라벨 심의	신청	10일	300위안(품목당)	지정검험검역기관	45일
	심의	30일			
통관신고	–	3일	2,000위안(최소)	통관업무 위탁업체	45일
세금납부		–		각 지역 세관	
검역심사	라벨	10일	400위안 미만	출입경 검험검역국 식품안전감관처	
	샘플	10~15일			
	위생허가증 라벨합격증	3일			
통관허가	–		300위안	–	

자료원 :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식품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2014)

나. 통관 전 포장 라벨 심의

- 2011년 4월에 발표한 '수입 포장식품 라벨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라벨에는 원산지와 중국 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중문라벨은 보통 수입대행사를 통해 신청함
- 라벨 심사의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는데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1차 심의기간 30일을 포함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45일 정도가 걸림. 라벨심의 비용의 경우 식품은 제품 한 종류당 약 300위안 정도를 지불해야 함
- 유의사항
  - · 중국어(간체) 라벨 작성 필수
  - · 기존 라벨은 라벨심의 및 등록 증명자료 제출

다. 통관 신고

– 일반 식품이 전체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까지 마치는데 약 한 달 반(약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 통관절차를 통과하는데 약 3일 정도가 필요하며, 통관 후 중문 라벨 심사에 10일 정도 걸림. 라벨 1차 검사 합격 후 무작위 샘플 추출검사에서 10~15일, 위생허가증과 라벨합격증을 받는데 3일이 소요됨

– 유의사항

· 통관업무 위탁업체를 통해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통관 시, 기본/특수/예비 3단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

라. 세금 납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수출입 검사 · 검역 비용방법'에 규정된 바는 다음과 같음

· 식품 검역비용은 일반적으로 400위안을 넘지 않음

· 수출입 식품라벨의 경우 300위안/장이며, 유효기간은 2년

· 통관비는 300위안

· 상품검사비용은 수출품 가격의 0.0045%로 부과됨

· 컨테이너 검사비용은 400위안/20 STD(26~28㎥)

· 건설비, 보안비 등은 160위안/20 STD

· 부두사용료는 141달러/20 STD

· 라벨 심사 대행비의 경우 수입 가격의 1% 내외로, 최소 2,000위안

마. 검역 검사

– 검역 심사 시 수입상이나 대리인은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품명, 원산지, 규격, 수량 및 중량, 가격, 생산일자 등 국가 질량검험검역총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수입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도 검역국에서 제품과 라벨을 다시 검사할 수 있으며, 세관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제품을 반입할 수 있음. 반입된 제품은 우선 검사검역기관에서 현장 위생검사를 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무작위로 추출한 제품에 대해 샘플검사가 진행됨

– 샘플검사는 제품이 중국 식품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중문 라벨에 포함된 내용 확인

위주로 진행됨. 이때, 대상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봉인돼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라도 사용이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 위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검사 · 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위생허가증'이 라벨에 부착되며, 이를 통해 중국 내 판매가 최종적으로 허가됨

바. 통관 허가

– 유의사항

· 심사 및 검역에 합격하고 관련비용 지불 후,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완료

※ 대중국 식품 수출 전 준비사항

· 수출기업 준비사항

위생관리 · 원산지 및 제품등록 여부 · 판매비준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 수출 진행

해당 기업의 중국지사 또는 대리상이 진행할 수 있으나 중국지사나 대리상이 수입권한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관 대리기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수출자 의무

수출자(대리상, 해당 기업 중국지사 및 수출대행기업)는 우선 상품검사관리국에 수출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신청서 관련 서류

수입상 등록신청서, 상공업 허가증, 법정대리인 신분증명, 대외무역 담당자 신분확인증 등의 복사본 및 원본, 기업안전관리제도 자료, 판매식품 종류, 판매지점, 2년 내 수입 · 가공 · 판매한 식품에 대한 상세 설명 등

· 유의 사항

신청서 접수 후, 접수번호를 받아야 라벨 신청과 관련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입 프로세스

라벨링 정보

'수입 포장식품 라벨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라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함

주요항만

상하이, 심천, 닝보, 저우산, 칭다우, 광조우, 텐진, 다롄 등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기구
(www.aqsiq.gow.cn)

세관 규정, 감독, 법률 가이드, 국제 협력, 항만 정보 등 안내

1. 수출계약

· 거래선(바이어) 발굴
· 계약진행

2. 서류준비

· 무역계약서 · 포장명세서 · 상업송장 · B/L
· 원산지증명 · 식검증 · 밀봉 증명서
· 영양성분 검측 결과 보고서
· 입국화물검역증명서(CIQ 증명): 기존 위생증명서 대체
· 자유판매 허가증 또는 권한

3. 선적/출항

· 수출통관 · 포워딩 업체 지정 · 운송

4. 수입신고/검사

지정된 검험검역기관에 검험검역신고 및 수입항구에 포장 라벨 심의를 신청하고, 검험검역신고가 완료되면 수입화물통관단이 발행됨

5. 통관/국내유통

· 세관 서류 제출
· 세금납부
· 현지 바이어 화물인수

품목별 통관 절차

육류 및 유제품	수산물	야채, 과일, 곡물	건강보조식품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기구 (동 · 식물 · 수산물 검역처)	수입항구 과일 감독 검험검역기구 검험검역기구 (과일 검역처)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건강식품 검역처)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수입식품검사)

통관

자료원 :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입 프로세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Chapter 4

전망 및 대응방안

• 전망 및 대응 방안

전망 **중국의 주민 수입 증가, 도시화율 제고, 안전 먹거리 추구 등으로 향후 화장품, 식품의 중국 내수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예상**

- 현재 중국의 화장품 소비액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자리로 올라섰으며, 향후 5년 간 중국 1인당 평균 화장품 소비액은 2배 증가 예상됨
- 중국의 바링허우(80년대 출생) 소비습관의 변화, 노령화 추세, 2016년 1월 1일 부 시행되고 있는 두 자녀 정책으로 향후 10년 중국의 식품소비는 50% 증가, 그 가치는 1조 달러 초과 예상
- 하지만,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소비재의 중국 진출 기회도 확대되는 반면, 진출에 따른 리스크도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방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특히 '13.5 규획(2016~2020년)기간' 화장품 및 식품안전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도는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법집행 및 검역 역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13.5 식품안전규획'(2017.2.5 국무원 통과)은 ①전 과정의 감독관리 강화 ②전 과정의 샘플검역과 리스크 경보 강화 ③기술 지원 강화(식품안전표준 제·개정, 빅데이터 활용 등)를 확정함
  -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통관에서의 규제 강화추세, 세관 점검 관리강화와 또한 중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인증기준 지속 강화할 것 예상

대응 이와 같은 차이나 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국내 준법경영, 올바른 파트너 선정, 인증기준 숙지 등 필요

1. 철저한 준법경영 필요

– 그 동안에는 법제도의 현장 집행이 다소 미흡하다 보니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있었으나, 이제 '융통성 있는 통관'의 시대는 끝났으며, 작은 빌미도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경영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제품 안전 기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신규 규제강화 및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최근 한 · 중간 민감 이슈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당장 리드타임을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사업을 전략적으로 펼쳐야 함

2. 중국 파트너 선정을 위해 AEO(공인성실기업)을 우선적 활용 필요

– 철저한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우량 파트너 선정이 가장 중요

· 중국 해관 검사비율이 'AEO(공인성실기업)'은 0.8%인데 반해, 일반 기업은 최대 8%, 불성실기업은 100%에 달하고 있어 중국 측 수입대리상 파트너 선정시 AEO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수입상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동향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출 서류 준비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원윈 협력을 강화해야 함

3. 제품 R&D 단계부터 '중국 요소' 고민 필요

–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안전, 품질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아야 함. 이렇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의 장점이 있음

☞ AEO 인증기업 확인 방법

· 中国海关企业进出口信用信息公示平台系统(credit.customs.gov.cn) 사이트 접속 후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기업 명단(AEO 기업 및 불성실기업명단)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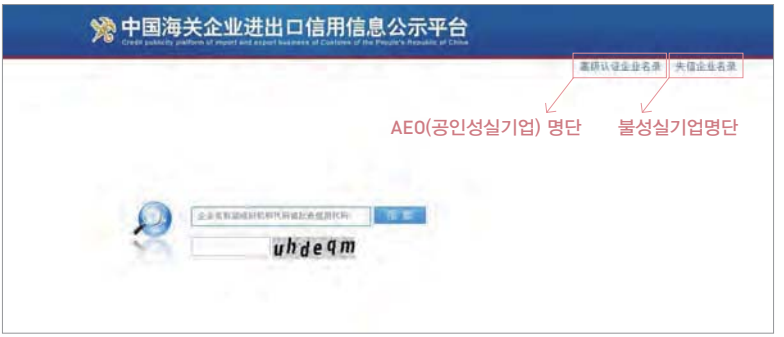

자료원 : 중국질검총국 등 관련자료 종합, KOTRA 베이징무역관 자료 종합

[표1] 수입 화장품 관련 주요 법규 정비 현황

법규	제(개정) 및 발표시간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89.11월 발표, '90.1.1 시행
화장품 표식 관리규정(化妆品标识管理规定)	'07.8월 발표, '08.9.1 시행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험관리방법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00.2월 발표, 4. 1 시행
화장품 광고 관리방법(化妆品广告管理办法)	'93.7월 발표, 10.1 시행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실시세칙 化妆品卫生监督条例 实施细则	'91.3.27 발표, 당일 시행 '05.5.20 개정판 발표, 6.1 시행
화장품라벨표시관리규범 (化妆品标签标识管理规范)	'07.7월 발표, '08.9.1 시행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 (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11.1월 발표, '12.2.1 시행
해외직구 허가 수입품 리스트 비고에 "위생허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 보충	'16.4월 발표 시행, 5.10 1년간 시행 연기 '16.11월, '17년 말까지 연기한다고 공고
소비세 조정	'16.9.30 소비세 인하 통지문 발표, 10.1 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	'07 화장품위생규범 발표 '15.12월 개정판 발표, '16.12.1 시행
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	'16.8월 발표, '17.3.1 시행 예정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표2] 수입 식품 관련 주요 법규 정비 현황

법규	제(개정) 및 발표시간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09.2월 발표, 6. 1 시행 '15년 4월 개정판 발표, 10. 1 시행
식품안전법 실시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	'09.7월 발표, 당일 시행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감독관리규칙 (进出口水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11.1.4 발표, 5.30 시행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감독관리규칙 (进出口肉类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11.1.4 발표, 6.1 시행
수출입식품안전관리규칙(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11.9.13 발표, '12.3.1 시행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12.3.22 발표, 5.1 시행
수입식품위생관리검사업무규정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工作规程)	'91.5.15 발표, 당일 시행
수출입 식품첨가제 검사검역감독관리업무규범 (进出口食品添加剂检验检疫监督管理工作规范)	'10.8.9 발표, 당일 시행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수입에 대한 허가관리규정(进口无食品安全国家标准食品许可管理规定)	'11.4.18 발표, 6.1 시행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관리규정 (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12.2.27 발표, 6.1 시행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관리규정 (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12.4.5 발표, 10.1 시행
식품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 (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12.4.5 발표, 10.1 시행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실시 세칙 (进口食品不良记录管理实施细则)	'14.2.26 발표, 7.1 시행
식품리콜관리방법(食品召回管理办法)	'15.3.11 발표, 9.1 시행
수입식품 접촉상품 검험 감독관리업무 규범 (进口食品接触产品检验监管工作规范)	'16.3.28 발표, 4.10 시행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리방법 (网络食品安全违法行为查处办法)	'16.7월 발표, 10.1 시행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Reference

주요 참고자료

- 중국 수입제품 검역 강화, 우리기업 대책은?(2017), KOTRA
- 전문가에게 듣는 中 통관 · 인증 이슈와 대응책(2017), KOTRA
- 사드배치 관련 중국전시회 참가영향 및 대책(2017), KOTRA
- 중국 화장품 시장 개척 과정(2017), KOTRA
- 통관 관련 기업애로사항(2017), KOTRA
-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입 프로세스(2016),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2017),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2016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거부사례 동향 분석(2017),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2017),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2016년 화장품 수출입 실적(2017), 관세청
- 대중국 화장품 수출 실적(2017), 관세청
- 한중 화장품 수출과정 및 통관(2017), 청도 보세구 한국비즈니스센터
- 화장품수출 가이드북(2017),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준비, 아모레퍼시픽 (2017)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와 대응방안(2017), 대한화장품협회

· 각국별 수출절차 조사(중국, 2017), 대한화장품협회

·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구비서류(2017), 대한화장품협회

· 중소화장품수출애로센터(2017), 대한화장품협회

·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2016), 한국무역협회(KITA,)

· 중국 식품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2014),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 2016 年中国化妆品行业现状及未来发展趋势及行业发展前景分析, 中国产业信息

· 中国食品产业发展现状分析(2016.12), 搜狐(sohu.com)

· 2016年中国食品行业发展9大趋势(2016.1), 中商情报网

· 2016年中国食品产业发展现状及未来趋势(2016), 产业研究智库

17
24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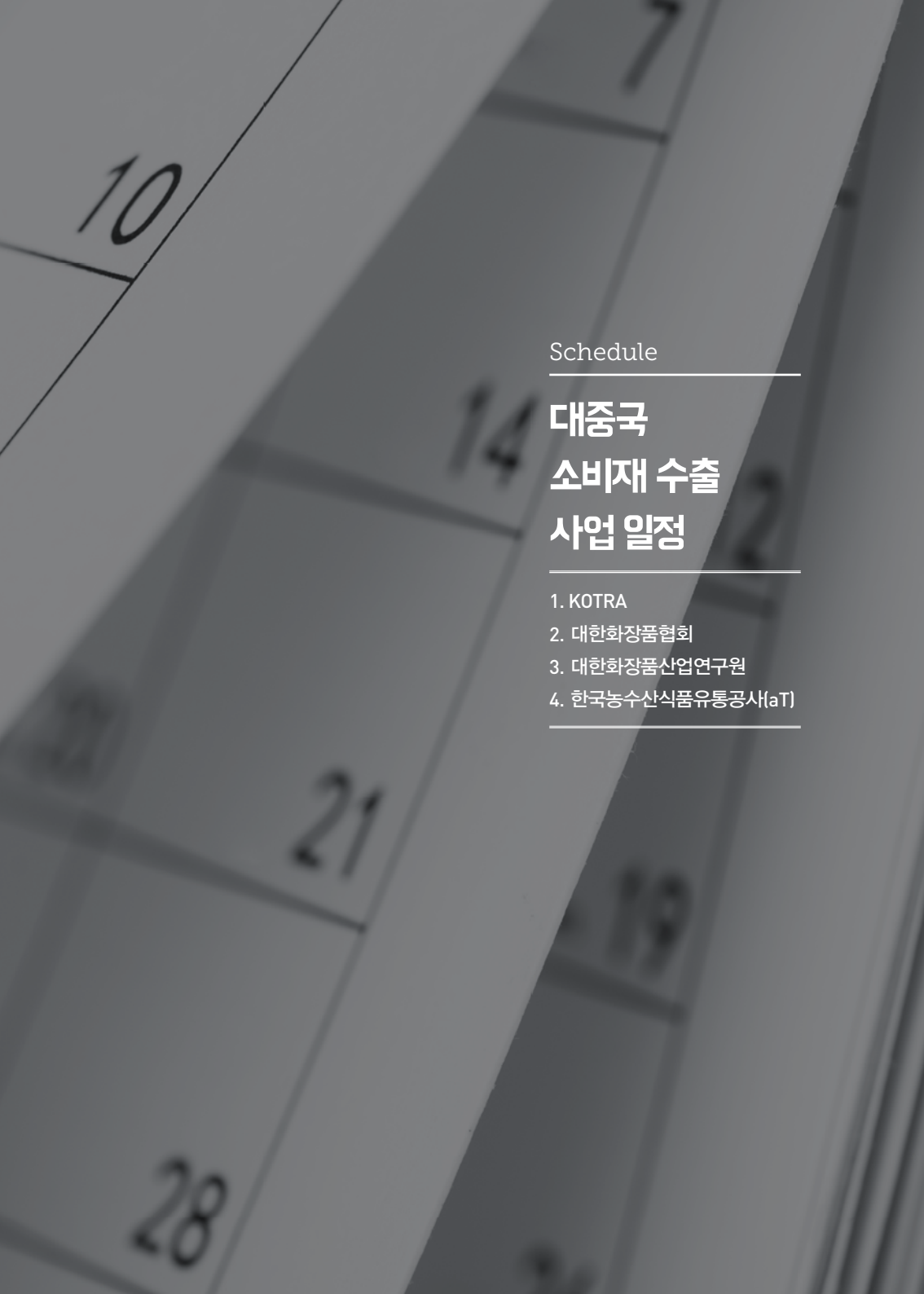

Schedule

대중국 소비재 수출 사업 일정

1. KOTRA
2. 대한화장품협회
3.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 | KOTRA
코트라

•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 일시/장소 : 매년 6월 중, 코엑스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중진공, 한국무역협회 등

– 참가 : 해외 유통망 · 벤더 300개사, 국내기업 1,000여개사

– 내용 : 1:1 비즈니스 상담, 쇼케이스 전시 상담, 글로벌 유통망 · 벤더 합동상담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 개요 : 5대 소비재 분야별 선도기업의 해외판매 확대를 통한 한국 소비재 해외시장 확대 및 후발 중소기업의 수출교두보 마련

· 5대 소비재 : 화장품, 패션의류, 농식품, 생활 · 유아용품, 헬스케어

– 사업기간 : 매년 5.1~4.30 (1년간)

– 지원규모 및 한도 : 50개사, 기업 당 4,110만원

· 국고 2,880만원, 참가기업 자부담 1,230만원

• 소비재 해외 유통망 지원사업(연중)

– 중국 소재 무역관과 현지 유통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 개최

· 타오바오 소비재 피칭 데모데이(2월, 상하이)

· 타오바오 파워셀러 입점 수출상담회(3월, 상하이)

· 티몰 한국 뷰티브랜드 입점 설명회(4월, KOTRA)

· 정저우–한국수입상품유통센터 연계 유통거점 사업(정저우)

· 하반기 별도 지원사업 진행예정

2 | 대한화장품협회

• 중국 제도 변화 대응 관련

– 중국제도 정보(중국법규집 국문번역판, 화장품 안전 기술규범 번역판 발간), 수출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중국 제도 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

– 중국 현지 진출 회사로 구성된 중국위원회 운영

– 중국 정부기관 및 협회 등과 교류회, 세미나, 초청행사 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중국 위생행정허가 지원

– 중국 위생행정허가 유료 교육

구분	3월	4월	6월	9월	10월	11월
일정	3/21, 3/22	4/26, 4/27	6/27, 6/28	9/19	10/24	11/21

– 교육생 모집 인원 : 각 회차당 100명

– 교육 일정은 교육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신청 안내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 → 일반 교육 및 세미나

– 교육 참가 문의 : 박미령 사원(070-8709-8613, tulip97@kcia.or.kr)

· 위생행정허가 FAQ 및 불합격 사례 모음집 작성 배포

· 중국 위생행정허가 대행기관 안내

• 해외 화장품 전시회 참가 지원

– 중국의 주요 화장품 미용박람회 참가

· 중국상하이화장품전시회 국가관 참가(5.23~25)

· 중국광저우화장품전시회 국가관 참가(9.3~5)

· 홍콩화장품전시회 국가관 참가(11.14~17)

· 전시회 참가 문의 : 임종근 부장(02-785-3898, rootim@kcia.or.kr)

3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중국 화장품시장 개척 지원 사업

– 화장품 전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건수 : 총2회/年

번호	지원 사업 개요	비고
1	2017년 중국(칭다오) 화장품 시장 개척 지원 – 일시 : 국내 워크숍(6.20), 중국 프로그램(6.27~6.30) – 장소 : 중국 산동성 칭다오(青岛)	확정
2	2017년 중국(청두) 화장품 시장 개척 지원 – 일시 : 국내 워크숍(10.11), 중국 프로그램(10.17~21) – 장소 :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	잠정

• 중국 화장품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

– 중국 수출 관련 이슈 세미나 개최

· 건수 : 총5회/年

번호	지원 사업 개요	비고
1	제1회 화장품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 – 부제 : 중국 수출 통관 및 진출 전략 – 일시 : 2017년 3월 2일(목), 14:00 ~ 17:30 – 장소 :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창조룸 I	완료
2	제2회 화장품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 – 부제 : 포스트 차이나 모색 –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14:00 ~ 17:30 – 장소 :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창조룸 I	확정
-	3~5회차 화장품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	미정

• 온라인 수출 가이드북(중국편)

– 중국 수출 절차 소개

– 매월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진행중)

•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 중국편 제작 및 온라인 제공(완료)

– 국가별 화장품 시장 이슈 중 중국 시장 이슈 매월 모니터링 및 게재 (진행중)

• 글로벌 시장 동향

– 중국 신문기사 번역 및 보고서 작성

– 매월 1~2건 홈페이지 게재(진행중)

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table>
<tr><td>개 요</td><td>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td></tr>
<tr><td>지원대상</td><td>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어민,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모든 농수산물
수출정보 수요자</td></tr>
<tr><td>지원분야</td><td>해외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td></tr>
<tr><td>지원내용</td><td>이용 범위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r><tr><td>시장정보</td><td>국내외 뉴스 및 국내외 동향분석 등</td></tr><tr><td>품목정보</td><td>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정보 등</td></tr><tr><td>수출안전정보</td><td>국가별 통관검역, 농약/첨가물, 수출검역제도, 식품안전관련법률</td></tr><tr><td>수출지원정보</td><td>해외시장맞춤조사, 수출정보SOS, 지원사업소개, 지원조직</td></tr><tr><td>수출입통계</td><td>수출입 통계, 해외 도 · 소매가격</td></tr><tr><td>비관세장벽</td><td>비관세장벽 현황, 통관문제사례, 통관요건 월드맵, 현지화자문</td></tr><tr><td>자료실</td><td>발간책자, 국가별수출입절차, 인포그래픽스</td></tr></table>해외시장맞춤조사 : 개별 특화요구 정보를 일대일 맞춤형 정보제공</td></tr>
<tr><td>이용방법</td><td>· 기본이용 : KATI 홈페이지 접속(www.kati.net) → 회원가입 → 정보이용
· 해외시장맞춤조사 : KATI(www.kati.net) 접속 → 메인 상단에 해외시장맞춤
조사 클릭 → 희망정보 요청 → 정보조사 후 게재</td></tr>
<tr><td>추진현황및 계획</td><td>· 수출관련정보 통합을 통한 One-stop 정보제공
· 수출안전정보 DB구축 및 제공
· 수출현안 · 이슈분석 정보 제공 : 지구촌리포트</td></tr>
<tr><td>담당부서</td><td>· 수출정보 조사자료 : aT 수출정보부 장지연 대리(02-6300-1679)
· KATI 회원가입 및 이용 : aT 수출정보부 조민지 사원(061-931-0879)
· 해외시장맞춤조사 : aT 수출애로상담실(02-6300-1119)</td></tr>
</table>

• 현지화 지원

<table>
<tr><td>개 요</td><td>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시장확대를 위한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 및 상품 분석 · 홍보</td></tr>
<tr><td>지원대상</td><td>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td></tr>
<tr><td>지원분야</td><td>해외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td></tr>
<tr><td>대상지역</td><td>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18개국
– (동아시아)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본
–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등
– (기타) 미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EU(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중동(UAE)</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 colspan="2">서비스 내용</th></tr>
<tr><td colspan="2">현지법률 · 제도(계약, 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td></tr>
<tr><td>비관세
장벽해소</td><td>
<table>
<tr><th>지원분야</th><th>주요 내용</th></tr>
<tr><td>법률일반</td><td>– 계약서 작성 자문, 현지법인 설립, 현지 근로허가 등</td></tr>
<tr><td>통관</td><td>– 수입가능 여부 조회, 관세 이외 부가세금 조회 등</td></tr>
<tr><td>SPS</td><td>–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시험검사, 인증기관 등</td></tr>
<tr><td>기타</td><td>– 기타 현지 비즈니스(통역 및 차량대여 알선 등) 지원 정보</td></tr>
</table>
</td></tr>
<tr><td>라벨링 지원</td><td>·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포장) 등록 및 제작 지원
(* 라벨링 작업 중 필요한 사전샘플 검사·검역비 지원 포함)</td></tr>
<tr><td>상표권 지원</td><td>·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비 지원</td></tr>
<tr><td>포장패키지
현지화</td><td>·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td></tr>
<tr><td>바이어
특화지원</td><td>· 바이어 경영진단, 코칭 및 컨설팅(시장 및 소비자 분석,
마케팅, 현지 물류 및 유통개선, 자금, 클레임 등)</td></tr>
<tr><td>상품 및
시장분석</td><td>· 지사별 신규 유망상품 발굴, 현지시장 진출여건 분석, 마켓테스트 및
홍보 등</td></tr>
</table>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포장패키지 및 바이어 특화지원 사업은 수출업체가 아닌 해외 바이어만을 대상으로 함</td></tr>
<tr><td>이용방법</td><td>·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전산 신청
· 신청서류 : 현지화사업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 모집공고 : www.at.or.kr, www.kati.net, global.at.or.kr 홈페이지 게시</td></tr>
<tr><td>담당부서</td><td>· aT 통상지원부: 오세원 차장(061–931–0861), 정지희 대리(061–931–0863)
양종인 사원(061–931–0865)</td></tr>
</table>

• 수출상품화 지원

<table>
<tr><td>개 요</td><td>수출유망 고부가상품 발굴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에 기여</td></tr>
<tr><td>지원대상</td><td>농식품 수출업체 또는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제조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
<table><tr><th>구분</th><th>지원내역</th><th>비고</th></tr><tr><td>1단계</td><td>· 상품개발 · 개선 및 마켓 테스트 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40백만원</td><td></td></tr><tr><td>2단계</td><td>·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 마케팅 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40백만원</td><td>※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출의무액 부여</td></tr></table>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제외</td></tr>
<tr><td>선정기준</td><td>· 서류전형 → 계량평가(1.5배수) → 해외aT추천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100점)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공개발표평가 대상업체 선정
· 공개발표평가(10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평가</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1월) ▶ 사업 약정 체결 (2월) ▶ 사업추진 및 점검 (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td></tr>
<tr><td>모집시기</td><td>· ‘17년 1.11일 限</td></tr>
<tr><td>신청방법</td><td>·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신청</td></tr>
<tr><td>문의처</td><td>· 홈페이지 주소 : http://global.at.or.kr
· 식품수출부 하정아 과장(061–931–0843), 김채은 사원(061–931–0848)</td></tr>
</table>

•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table>
<tr><td>개 요</td><td>농가소득과 연계성을 높이고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집단·공동브랜드까지 개념을 확장하여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집중 육성</td></tr>
<tr><td>지원대상</td><td>신선농산물 또는 국가인증* 농식품 브랜드
* 전통식품품질인증, 6차산업화 인증, 지리적표시(GI) 인증 등</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table><tr><th>구 분</th><th>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th></tr><tr><td>지원대상</td><td>· 신선농산물 또는 국가인증 농식품 브랜드
* (국가인증)전통식품품질인증, 6차산업화 인증, 지리적표시(GI) 인증 등</td></tr><tr><td>지원내용</td><td>· 목표국가 진출을 위한 브랜드 등록·컨설팅·마케팅 비용</td></tr><tr><td>사업비 지원한도</td><td>· 총 사업비의 80%이내 (최대 200백만원)
* 단, 지원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 가능(잔여예산 발생시 등)
· 지원비율 : 1~3년차(80%), 4~5년차(50%)</td></tr><tr><td>선정방법</td><td>·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내외부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계량, 비계량 평가</td></tr><tr><td>사업량</td><td>· 6개 브랜드 내외</td></tr></table></td></tr>
<tr><td>선정기준</td><td>·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면접심사(선정위원회)
· 평가대상 : 업체별 목표 국가 대상 브랜드육성 사업 계획서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면접심사)
· 최종선정 :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필요시 추가선정 가능)
* 비계량평가 시 선정위원회 구성(내· 외부 전문가 4인 이상)을 통해 객관성 제고</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2월) ▶ 사업 약정 체결 (3월) ▶ 사업추진 및 점검 (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td></tr>
<tr><td>모집시기</td><td>· 모집시기 : 매년 1–2월 중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r><td>신청방법</td><td>·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신청</td></tr>
<tr><td>문의처</td><td>· aT 식품수출부 정규영 차장(061–931–0842), 정재열 대리(061–931–0845), 백지현 사원(061–931–0833)</td></tr>
</table>

• 해외공동물류센터

<table>
<tr><td>개 요</td><td>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냉장 · 냉동 물류서비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의 80% 이내
– 업체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이(5백만원~5천만원)

<table>
<tr><th>구분</th><th>지원내역</th><th>지원내용</th></tr>
<tr><td rowspan="2">해외공동물류센터</td><td>냉동·냉장창고</td><td>이용료의 80%</td></tr>
<tr><td>상온창고
(칭다오물류센터)</td><td>이용료의 50%</td></tr>
<tr><td>도쿄소포장센터</td><td>소포장센터</td><td>임차료의 60~80%</td></tr>
</table></td></tr>
<tr><td>추진절차</td><td>추진계획 수립 ▸ 모집 및 선정 (상 · 하반기) ▸ 사업집행 및 정산(매월) (1~11월)</td></tr>
<tr><td>이용방법</td><td>aT해외지사
관리감독 ↓ 5. 비용
수출업체 2. 선적 → 위탁 물류업체(창고) 4. 운송 → 유통업체
1. 오더 및 계약 체결
3. 대금결제
바이어</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 황 : 13개국 47개소('16년)
· 계 획 : 14개국 49개소('17년)</td></tr>
<tr><td>담당부서</td><td>· aT 통상지원부 윤상영 차장, 김지원 사원(061–931–0866)</td></tr>
</table>

• 중국 콜드체인 구축사업

개 요	농식품 냉장·냉동 물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중국 내륙지역 콜드체인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 냉동·냉장식품 내륙시장 개척 강화
지원대상	중국의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 80% 지원 – 주요 물류거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공동물류센터에서 거점지역 내 근거리 배송 지원 – 냉장식품 및 신속운송이 필요한 소량 냉동식품 항공운송료 80% 지원 · 지원한도 : 정기노선 및 비정기노선 업체별 10~50백만원 – '17년 이용업체 모집 및 기존업체 평가를 통해 업체당 한도 설정

구분	출발지역	도착지역	지원내용
정기선	칭다오 물류센터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	냉동 · 냉장 운송료의 80%
정기선 (거점지역내 배송)	거점지역 공동물류센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 거점지역 소비처 – 유통매장, 경소상 창고 등	
비정기선	칭다오 물류센터	· 중국 내륙지역 – 중국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	냉동 · 냉장 운송료의 80%
비정기선 (항공운송)	칭다오 물류센터	· 중국 내륙지역 – 업체 항공운송 희망지역	

선정기준

· '17년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이용업체 선정
중국 내륙지역 냉동 · 냉장 운송비 (80%)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이용업체는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가 모집 및 선정하고, 업체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진행절차

모집공고 (1월) ▶ 업체평가, 선정 (1~2월)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

신청방법	· 모집시기 : '17.2월 · 참가신청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문의처	· aT 통상지원부 윤상영 차장, 김지원 사원(061–931–0866)

•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

개 요	FTA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수출업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 기회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애로사항 컨설팅 및 교육
지원대상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조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생산자조직·단체] –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작성·관리 프로세스 구축 –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유통단계별 원산지 관리 전략 수립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 및 생산자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적용 [수출업체] –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거래 현황 분석 – 거래 단계별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확인방법(가이드라인) 교육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및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 – 원산지 증명서 · 확인서 실제 발급 대행 ※ 1:1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의 FTA 활용 및 통관 무역실무능력 제고
추진절차	1~2월: 품목별 FTA 활용실익 분석 및 사업공고 → 3월: 지원대상선정 (생산자 조직, 수출 업체) → 4~10월: 사업시행 → 11월: 최종점검 및 결과보고 → 12월: 정산 및 평가
이용방법	· aT 홈페이지에서 전산 신청(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모집공고 : www.at.or.kr, global.at.or.kr 웹사이트에 게시
추진현황 및 계획	· 신청 기간 : 2017. 3월 · 사업 시행 : 2017. 4~10월
담당부서	· aT 통상지원부 오세원 차장(061–931–0861), 정지희 대리(061–931–0863)

•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

개 요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 지원을 통해 해외 신규바이어 발굴 및 잠재적 수출시장개척 도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품목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7.1~11월 * 단, 2016.12월 실적은 소급 지원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대기업 제외) · 지원품목 : 수출 농식품 전반(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제외) · 지원비율 : 시험수출 및 샘플발송을 위한 운송·통관비의 90%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00만원 이내(동일 바이어 대상 최대 4회) · 지원내용 1. EMS, DHL 등 국제 특송 송부시(총 특송비 기준) 2. 시험수출 형태(정식 통관)의 샘플 송부시 – 국내내륙운송비, 해상(항공)운임, 국 · 내외 통관비, 해외내륙운송비 기준 3. 국별 송부 여건 고려하여 핸드캐리로 발송시 · 지원조건 :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필증 상, 거래구분 92(견본품 반출), 결제방법 GN(무상거래)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추진절차	수출지원시스템 지원 신청 ▸ 관련 증빙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월1회) ▸ 본사는 지사별 결과 취합후 정산지급
추진현황 및 계획	· 샘플통관운송비지원사업 공고(1월) · 매월1회 사업비 정산 지급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신선농산물 : 20백만원(20업체) – 가공식품 : 80백만원(60업체)
이용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관련 증빙서류 (통관·운송비 영수증, 마켓테스트 결과) 관할지사에 제출
담당부서	· aT 시장다변화 T/F팀 – 담당자 : 양재성 차장(061–931–0884), 고현미 대리(061–931–0885)

• 해외인증 등록 지원

개 요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대 상 인증제도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기준: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지원범위: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용, 대행비 등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1~2월) ▶ 신청서 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 ▶ 인증 취득 후 관련증빙 제출 ▶ 증빙 검토 후 비용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 지원대상 선정업체가 인증 획득 완료 후 aT지사에 정산 요청
이용방법	· 수출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사업 신청 · aT본사에서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관할지사에 통보 / aT관할지사는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사후관리 ·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 지사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증빙서 제출 · aT지사는 증빙서 검토 후 정산지원 결과를 매월 단위 본사 보고
담당부서	· aT 아태수출부 – 담당자 : 윤진형 대리(061–931–0963)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1. 종합박람회 참가

<table>
<tr><td>개 요</td><td colspan="5">주요 해외식품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colspan="5">농식품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colspan="5">
<table>
<tr><th>구 분</th><th>지원대상</th><th>지원비율</th><th>지원한도</th><th>비 고</th></tr>
<tr><td rowspan="2">· 부스임차비</td><td>중소기업</td><td>100%</td><td rowspan="2">1부스</td><td rowspan="2">한국관 표준부스
(3×3m 기준)</td></tr>
<tr><td>대기업</td><td>50%</td></tr>
<tr><td rowspan="2">· 장치비</td><td>전 업체</td><td>100%</td><td rowspan="2">1부스</td><td rowspan="2">한국관 표준부스
(3×3m 기준)</td></tr>
<tr><td>대기업</td><td>50%</td></tr>
<tr><td rowspan="2">· 기본비품임차비</td><td>전 업체</td><td>100%</td><td rowspan="2">1부스</td><td rowspan="2">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td></tr>
<tr><td>대기업</td><td>50%</td></tr>
<tr><td>· 운송통관비/
냉장(냉동)
비품임차비</td><td>신선농산물
수출업체</td><td>100%</td><td>300만원</td><td>신선농산물에 한함</td></tr>
</table>
</td></tr>
<tr><td>추진절차</td><td colspan="5">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2개월 전) ▶ 박람회 참가</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colspan="5">· 현황 : 연간 57회 참가(종합박람회 31, 벤더박람회 15, 아웃소싱 11)
· 계획 : '17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3~4월), '18년 참가계획 확정('17.10월)</td></tr>
<tr><td>이용방법</td><td colspan="5">· 모집시기 : 연 2회, 상반기(4월, 10월)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 · 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td></tr>
<tr><td>담당부서</td><td colspan="5">· aT 구미수출부 김혜진 사원(061-931-0976)</td></tr>
</table>

<참고> 17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 (총 57회)

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총 계〉		57
〈종합박람회〉		31회
1. 모스크바(PROD EXPO)	러시아 / 모스크바	2.6–10
2. 두바이(Gulfood)	UAE / 두바이	2.26–3.2
3. 애너하임(NPEW)	미국 / 애너하임	3.10–12
4. 도쿄(FoodexJapan)	일본 / 도쿄	3.7–10
5. 멕시코(Alimentaria)	멕시코 / 과달라하라	3.8–10
6. 영국 런던(IFE)	영국 / 런던	3.19–22
7. 북경 유아용품박람회(MICF)	중국 / 북경	3.25–27
8. 베트남 호치민(F&H Vietnam)	베트남 / 호치민	4.25–27
9. 브라질(APAS)	브라질 / 상파울루	5.2–5
10.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 / 광저우	5.1–5
11. 캐나다 식품박람회(SIAL)	캐나다 / 몬트리올	5.2–4
12. 아프리카(IFEA)	남아공 / 요하네스버그	5.7–9
13. 밀라노 국제식품박람회(TUTTO)	이태리 / 밀라노	5.8–11
14. 상하이(SIAL China)	중국 / 상해	5.18–20
15. 필리핀(IFEX)	필리핀 / 마닐라	5.19–21
16. 방콕(Thaifex)	태국 / 방콕	5.31–6.4
17. 미얀마(F&H Myanmar)	미얀마 / 양곤	6.7–9
18. 타이베이(Food Taipei)	대만 / 타이베이	6.21–24
19. 뉴욕(Fancy Food Show)	미국 / 뉴욕	6.25–27
20. 말레이지아(MIFB)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7월
21. 싱가포르 스페셜리티&파인푸드	싱가포르	7.18–20
22. 홍콩(Food Expo)	홍콩	8.17–19
23. 인도 뭄바이(WOFI)	인도 / 뭄바이	9.14–16
24. 이스탄불(World Food)	터키 / 이스탄불	9.7–10
25. 홍콩(Asia Fruit Logistica)	홍콩	9.6–8
26. 모스크바(World food Moscow)	러시아 / 모스크바	9.12~9.15
27. 독일 쾰른(ANUGA)	독일 / 쾰른	10.7–11
28. 베이징(World of Food)	중국 / 베이징	11월
29. 카자흐스탄(World Food)	카자흐스탄/알마티	11.2–4
30. 베트남(Food Expo)	베트남 / 호치민	11.16–19
31. 인도네시아(Sial Interfood)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11.22–25

<참고> 17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 (총 57회)

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종합박람회 – 벤더박람회〉		15회
1. 고쿠부(홋카이도)	일본 / 홋카이도	1월
2. 카나칸 종합기획상담회	일본 / 호쿠리쿠	2월(8월)
3. 수퍼마켓트레이드쇼(SMTS)	일본 / 도쿄	2.15–17
4. 춘계 가토우그룹 상담회	일본 / 고베	3월
5. 중국성도당주교역회	중국 / 청뚜	3.26–28
6. 외식비지니스위크(간사이)	일본 / 오사카	5.23–35
7. 고쿠부 수도권 · 관동	일본 / 도쿄	6월
8. KeHE (신규)	미국 / 미네소타	6.12–13
9. 닛폰악세스 관서	일본 / 오사카	7월
10. 닛폰악세스 사이타마	일본 / 사이타마	7월
11. 이토츄(하반기)	일본 / 오사카	7월
12. 알프레사 헬스케어	일본 / 도쿄	7월
13. ECRM	미국 / 애리조나	7.26–29
14. 외식비즈니스 위크	일본 / 도쿄	8.30–9.1
15. 추계 가토우그룹 상담회	일본 / 고베	9월
〈종합박람회 –아웃소싱〉		11회
1. 프랑스 국제농기계	프랑스 / 파리	2.26–3.2
2. VIV ASIA 2017	태국 / 방콕	3.15–17
3. 중국 식품소재박람회(FI	중국 / 상해	3.23–25
4. LIVE STOCK 2017 PHILIPPINE EXPO	필리핀 / 마닐라	5.24–26
5. 일본 식품소재박람회(IFIA)	일본 / 도쿄	5.18–20
6. 미국 시설원예박람회	미국 / 콜럼부스	7월
7. 태국 국제농기계(SIMA SEAN)	태국 / 방콕	9월
8. 중국 국제농기계	중국 / 미정	10월
9. 중국 식품음료박람회(CFDF)	중국 / 충칭	10.26–28
10. 이태리 글루텐프리엑스포	이탈리아 / 리미니	11월
11. 아부다비식품박람회(SIAL ME)	UAE / 아부다비	12.4–6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2. 개별박람회 참가

<table>
<tr><td>개 요</td><td colspan="3">aT 또는 유관기관이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colspan="3">농식품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colspan="3">
<table>
<tr><th>구 분</th><th>5대 시장</th><th>동남아 시장</th><th>동남아 시장</th></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2">4,000천원 / 1회</td><td>8,000천원 / 1회</td></tr>
<tr><td>해당지역</td><td colspan="2">· 5대 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 러시아, 대만
· 동남아 시장</td><td>· 5대 시장과 동남아시장을 제외한 전 지역</td></tr>
<tr><td>지원항목</td><td colspan="3">· 임차비 : 18㎡ 이내 / 장치비 : Shel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전기 등
·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 · 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td></tr>
<tr><td></td><td colspan="3">· 출장자(1인) 왕복항공료(E-Class 기준, 5대 시장 제외)</td></tr>
</table>
* 대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의 50% 범위 내 지원
</td></tr>
<tr><td>추진절차</td><td colspan="3">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매년 1월 / 하반기 : 매년 4월) ▶ 박람회 참가 (연중) ▶ 참가비 지원 (30일 이내)</td></tr>
<tr><td>이용방법</td><td colspan="3">· 모집시기 : 연 2회(4월, 11월)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개별참가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참가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 · 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colspan="3">· 현황 : 연간 150회
· 계획 : '17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 '17년 참가계획 확정('17.10월)</td></tr>
<tr><td>담당부서</td><td colspan="3">· aT 구미수출부 김혜진 사원(061-931-0976)</td></tr>
</table>

• 해외 판촉 행사 지원

<table>
<tr><td>개 요</td><td>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td></tr>
<tr><td>지원대상</td><td>·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협회,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단,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입점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추진이 가능한 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판촉마케팅 활동비
–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매체광고, 전단지, 포스터 등), 시식행사비
* 지원한도 내 행사관련 발생비용의 80% 지원(단, 대기업은 발생비용의 50% 지원)
* 수출선도조직, 단체 및 협회는 자부담 15%, 1억원 한도 내 지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지원 대상</th><th colspan="2">지원한도(백만원)</th><th>지원비율</th></tr>
<tr><th>부류</th><th>종합</th><th>(%)</th></tr>
<tr><td rowspan="2">국내공모</td><td>수출업체</td><td colspan="2">30</td><td>80</td></tr>
<tr><td>수출선도조직, 단체 및 협회</td><td colspan="2">100</td><td>85</td></tr>
<tr><td>해외aT</td><td>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td><td>30</td><td>50</td><td>80</td></tr>
</table>

– 사업의무액 : 지원액 2배 이상의 수출(입)액 (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한도 축소)</td></tr>
<tr><td>선정기준</td><td>· 계량평가(50점) : 수출목표액, '15년 대비 '16년도 수출증가율, 관련서류 (해외인증, 라벨링, 카탈로그 보유여부) 등
· 비계량평가(50점) : 행사계획 및 품목 · 국가별 수출확대 가능성, 수입업체 (바이어) 규모 등 종합평가
* 전년도 aT 판촉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 적용</td></tr>
<tr><td>진행절차</td><td>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모집 (10월) →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선정 (11월) → 사업 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 (점검, 결과보고, 정산)
당해연도 하반기 사업자 모집 (4월) → 당해연도 하반기 사업자 선정 (5월) → 사업 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 (점검, 결과보고, 정산)</td></tr>
<tr><td>모집시기</td><td>· '17년도 하반기 국내공모 판촉 사업자 공고 및 선정 예정(4~5월 중)</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매년 4월, 10월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r><td>문의처</td><td>· aT 식품수출부 성국경 차장(061–931–0841), 한다솔 사원(061–931–0847)</td></tr>
</table>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C·A
대한화장품협회

aT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중국 화장품, 식품 수출 핸드북

KOCHI자료 17-008
ISBN : 979-11-6097-271-9(93320)
979-11-6097-290-0(95320) (PDF)

발 행 인 김재홍
작 성 자 정도숙, 김성진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17년 06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137–749)
전 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중국사업단(02–3460–7414), 소비재사업팀(02–3460–3342)

Copyright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